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6-57호

2016년 12월 22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2호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3호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4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5호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6호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7호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8호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29호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0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1호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2호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3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4호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5호	전라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6호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7호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8호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39호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40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41호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42호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14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77호	2016년 발기반 정비사업 착수지구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3호	담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담양 군계획시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4호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7호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8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9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0호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1호	영북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3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5호	대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75호	도로공사시행 변경허가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87호	측량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89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6-21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3-44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6-21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66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공고 제2016-124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호/자유시장 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16-33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16-2208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6-2227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순천시 고시 제2016-167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6-1605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16-1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16-1341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16-135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16-136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방수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담양군 고시 제2016-117호	담양 군관리계획(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성군 공고 제2016-1249호	동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화순군 고시 제2016-123호	화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16-124호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공고 제2016-1049호	화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사전 열람 공고
강진군 공고 제2016-564호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도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해남군 고시 제2016-199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50, 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6-200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6-201호	해남군 군계획시설(도로 : 소2-2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6-202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16-105호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진도군 고시 제2016-51호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진도교육지원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2호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3호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수입금

제2조제2항 중 “적립하거나,”를 “적립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순세계잉여금 중”을 “순세계잉여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전라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로, “예탁하고,”를 “예탁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 보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와 같이”를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채상환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지방채상환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지방채상환기금출납원: 예산총괄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4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제1항 중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팀장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5조의2(중전의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도정조정위원회”

를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5호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관리·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기금운용관이”를 “기금운용관으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심의한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 중 “8월31일”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월10일”을 “9월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일전”을 “5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출납 폐쇄”를 “출납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월말일”을 “5월 10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회계연도의 성과분석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에 따른다.

제7조의2제2항 중 “운용성과”를 “기금운용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한다.

제7조의3 중 “제7조의1 제1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7조의4 중 “도지사”를 “(조신설 2009. 10. 5) ① 도지사”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4제2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을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으로, “기금의”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개별기금관련”을 “개별 기금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중”을 “기금 중”으로 한다.

제15조 중 “예탁금을 반환 받을”을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관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 기금운용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융자금”을 “제1항의 융자금”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융자금의 운용관리”를 “제3항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전남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6호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을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집중육성 사업”을 “집중육성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향상 사업”을 “향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위탁 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체육,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

제4조의 제목 “(재단운영)”을 “(재단 운영)”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운영”을 “조직·활동”으로 한다.

제5조 중 “이사장을 비롯”을 “이사장을 포함”으로, “두며”를 “두되”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도”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금 조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시전 1월”을 “개시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종료후 2월”을 “종료 후 2개월”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운영”을 “재단 운영”으로, “지도감독”을 “지도 및 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제1항에 따라 지도 및 감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취할”을 “할”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한

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 규정) 제4조제2항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내
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7호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라.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3.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해당 건축자산을 말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획착오, 오기, 누락 또는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③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써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라남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건축자산 기초조사)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식 및 형태
4. 제출자료 내용
5. 제출자료의 활용계획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의 조세감면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과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8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특례를 적용할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3.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의 위원
4.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실·국장 및 과장
5.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시민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①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17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근대건축물의 보호 등) ① 도지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고,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8호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3호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행위(이하 “불법 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 기준

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나.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2.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3.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 지급
4.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 지급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관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방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 내용			항목기재
	신고 대상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고 대상 행위	○ 신고 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신고 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 한다) 등을 하는 행위				
○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구체적 사실 기술〉				
위와 같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신고포상금 등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별지 제5호 서식]

제 차 신고포상금 등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의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29호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을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정함을”을 “규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도지사”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1조 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도 건축위원회”를 “도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기본법」 제18조에”를 “「건축기본법」 제18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항 제3호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인”을 “1명”으로, “10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성한다.이 경우”를 “구성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있다. 제2항에 의한”을 “있으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호 중 “제5조의2 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하여”를 “부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를 “제4조제1항제3호부터”로, 제4조 제4항 제1호부터”를 “제4조제4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 칙”을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3장에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2. 도 누리집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사감리자 등록명부의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모집에 응한 자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하여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기재사항의 변경 등) ① 제13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제13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3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권자의 변경사항 통보)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중전의 제13조) 중 “범위 안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사감리자의 지정) ①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람

② 허가권자는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감리자 관련 업무의 대행) 도지사,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및 다른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9, 별지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0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원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등 조치계획
6.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예산을 재정계획 및 소방특별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병원장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취업·창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창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3장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

제14조(장례 지원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제15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17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위원의 임명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악대, 인원·장비 등의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기구
4.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5.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수당과 여비) 제7조의 위원회 및 제17조의 장례위원회, 제18조의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1호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된 지방의제21”을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녹색전남21”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추진
2.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3.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제5조제4호 중 “지방의제21과”를 “지속가능발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지방의제21”을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명, 부의장 1명” 을 “2명” 으로, “100인” 을 “15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동의장” 을 “공동의장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지방의제21” 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같은 호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동부지역본부장, 환경보전과장

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 을 “도지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 중 “사무국을” 을 “사무처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의장, 감사” 를 “감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무국” 을 “사무처”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조 중 “녹색전남21” 을 “협의회” 로, “약간 명” 을 “10명 이내” 로, “의장의” 를 “상임의장의” 로, “의장이” 를 “상임의장이”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 등)” 을 “(사무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 을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 1명과 4명 이내의 사무직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 을 “사무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 밖의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상임의장” 을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사무국” 을 “사무처”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 를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2호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2.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3.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및 조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의 업무에 사용
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준수

제10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는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3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공동체 관리 감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선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4조(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 복리시설
3.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한 의사결정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시설물

제5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3.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4. 시민단체, 주택관련 단체·협회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리지원 단장은 단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업무) 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각 호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 및 자문의 요청)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사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 관리지원단은 자문 또는 감사를 위해 해당 시·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5조의 관리지원단 및 제11조의 우수단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서 제3조의7까지 및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 (공동주택 관리비 등 전반)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특이사항		연 락 처	
감사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_____아파트 _____공동주택 관리(관리비 등)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감사를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 _____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서 2. 감사에 필요한 소명자료(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별지 2]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_____아파트 _____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지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4호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을 “시행령” 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46조제1항”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규정을 준용하여” 를 “규정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헥타아르당” 을 “1헥타르당”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구분소유등기에” 를 “구분소유등기에도”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을 “영 제2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1호의에” 를 “제2조제2항제1호에” 로,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을 “노후·불량건축물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70호/ha” 를 “70호/헥타르”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0인/ha” 를 “200명/헥타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가목” 을 “제3호라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8조를 준용한다” 를 “제28조에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를 “제8조에” 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라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를 제4조제1항제4호에” 로, 같은 항 제4호 중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를 “제4조제1항제7호에” 로,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를 “제13조제1항제5호에” 로, 같은 항 제8호 중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를 “제8조제3호에” 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④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누리집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다.

제9조제2항 중 “대가를 준용한다” 를 “대가에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따라서”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를 준용한

다”를 “이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3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제다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자격 및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 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0조의2”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전라남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1호에”를 “「건축법」 제2조제1호에”로, “범위 안에”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잔여소유”를 “남은 소유”로, “시·군「건축조례」”를 “시·군 건축조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준용하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에서 준용되는”을 “제3호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에”를 “제한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4항을 준용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을 준용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시장·군수는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누리집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 ②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1, 별지 2, 별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m ²)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시행구역 위치		구역면적	(m ²)	
	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	토지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를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호 번지 상가 동호 아파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3.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용도지역 지구									
조합설립인가일자				조합원수					
사업시행인가일자				사업시행변경일자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화)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평형 및 세대수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철거공사							
		기반시설공사							
		기타공사							
		이주비지원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3차변경			
		1차변경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일자		이자발생 사유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5호

전라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전라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6호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7호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민관협력체계”를 “분석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 의”를 “분석평가의”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도지사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최전에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두되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삽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138호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만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39호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같은 조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40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로 한다.

별표 1 중 여수시에 6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여수시	67	송현유치원	웅천동 1798-7

별표 1 중 순천시의 4번란(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순천시의 51번 위치란의 “해룡면 신대리 2105”를 “해룡면 좌야로 77-19”로 한다.

별표 1 중 순천시에 53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순천시	53	순천정원유치원	중앙초등길 64(풍덕동)

별표 1 중 광양시의 12번란(진상초등학교병설황죽분교장유치원)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고흥군의 49번 위치란의 “고흥읍 등암리 164-10번지”를 “고흥읍 고흥로 1637-12”로 한다.

별표 1 중 보성군의 34번란(웅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영암군의 23번 위치란의 “삼호읍 서창호수길 24-6”을 “삼호읍 서창호수길 4”로 한다.

별표 1 중 무안군의 32번 위치란의 “삼향읍 남악리 1586번지”를 “삼향읍 남악영산길 3”으로 한다.

별표 2 중 목포시의 10번 위치란의 “산정로21번길 22(산정동)”을 “산정로21번길 22(호남동)”으로 하고, 같은 시 32번 위치란의 “텃골로33번길 94(상동)”을 “텃골로33번길 94-8(상동)”으로 한다.

별표 2 중 목포시에 3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목포시	37	목포백련초등학교	연산백련로 40(연산동)

별표 2 중 나주시의 43번 위치란의 “빛가람동 25”를 “한빛로 144(빛가람동)”으로 한다.

별표 2 중 나주시에 44번란 및 45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나주시	44	리온초등학교	빛가람동 384
	45	한이름초등학교	빛가람동 848

별표 2 중 광양시의 13번란(진상초등학교황죽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보성군의 36번란(웅치초등학교)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영암군의 27번 위치란의 “삼호읍 서창호수길 24-6”을 “삼호읍 서창호수길 4”로 한다.

별표 2 중 신안군의 62번란(안좌초등학교반월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목포시의 9번 위치란의 “당가두로38번길 23(옥암동)”을 “남악2로22번길 28-7(옥암동)”으로 한다.

별표 3 중 나주시의 4번 위치란의 “금천면 영산로 5691”을 “빛가람동 315”로 한다.

별표 3 중 무안군의 8번 위치란의 “삼향읍 남악리 2535”를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38”로 한다.

별표 3 중 함평군에 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함평군	8	학다리중학교	학교면 학교길 77

별표 3 중 신안군의 13번란(도초중학교)을 삭제한다.

별표 4에 11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명 칭	위 치
116	학다리고등학교	학교면 학교길 7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신안군의 안좌면 반월리란(안좌초등학교반월분교장),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도초면 수향리란(도초중학교), 벽지 라지역 중 광양시의 진상면 황죽리란(진상초등학교황죽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41호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을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영 제10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조례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42호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징수 대상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1. 교원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2.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의 정보공개수수료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3.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2. 전라남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징수 요구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수수료 금액(제3조제1항 관련)

1. 응시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응시수수료 가. 일반교과시험 응시수수료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교과시험	1인당 1인당	25,000원 35,000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6,000원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12. 22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4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77호

2016년 밭기반 정비사업 착수지구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16 밭기반정비사업 착수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사업목적 :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사업기간
		시군	읍면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지구			147	4,258,200	3,406,000	426,100	426,100	
장성군	석마지구	장성	삼서	60	1,738,200	1,390,000	174,100	174,100	'16.11.~' 17.12
함평군	석창지구	함평	손불	87	2,520,000	2,016,000	252,000	252,000	"

- 사업효과 :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세부내용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사업 시행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재난안전실(전화061-390-7488) 및 함평군 안전건설과(전화061-320-34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3호

담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담양 군계획시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82호(2015. 9. 24.) 담양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2015-336호(2015. 11. 12.) 담양 군계획시설(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I.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1.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6	공공청사	(중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변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508번지 일원	11,260	2015.9.24. 전고 제2015-282호	

○ 변경 내용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조례 4084호, 2016.7.7.)에 의거 시설명칭 변경

2. 공공청사 결정 도면(변경) : 게재생략

○ 변경 내용 : 확정측량에 따른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3. 관계 도서는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061-380-31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I. 담양 군계획시설(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508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담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변경없음)

나. 명 칭 :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신축공사(당초)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공사(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11,222m²(당초) → 11,260m²(변경)

나. 규 모 : 본관동 지상 2층, 부속동 지상 1층 / 한옥형철근콘크리트 구조(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전라남도지사(축산위생사업소장)(당초)

→ 전라남도지사(동물위생시험소장)(변경)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변경없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가. 착수예정일 : 2016. 1. 1.

나. 준공예정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자의 성명 · 주소 : 다음

7.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8.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061-4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번호	토지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지적 (㎡)	편입 (㎡)			지적 (㎡)	편입 (㎡)				
1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502	답	278	278	502	답	278	278	전라남도			
2	〃	503	답	536	536	503	답	536	536	전라남도			
3	〃	506-8	답	1,365	1,365	506-8	답	1,365	1,365	전라남도			
4	〃	508	답	8,104	7,489	508	답	7,495	7,495	전라남도			
5	〃	582-5	답	181	166	582-5	답	163	163	전라남도			
6	〃	533-1	구	465	43	533-8	구	34	34	농림축산 식품부			
7	〃	533-2	구	1,260	156	533-9	구	153	153	농림축산 식품부			
8	〃	533-3	구	1,015	994	533-10	구	992	992	농림축산 식품부			
9	〃	741-1	도	3,445	195	741-2	도	244	244	국토교통부			
계		9필지		16,649	11,222			11,260	11,260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4호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 시 행 자 : 곡성군수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내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 보수 보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
 - 나. 사업개요
 - 제 당 : 제방고르기 및 준설 : L=130m (H=3.7m→4.0m) 준설:V=6,972m³
 - 여 수 토 : 물넘이 L=5.0m, 방수로 L=20.0m, B=5.0
 - 복통 및 사통 : 복통(D800) L=14.8m, 사통(D300m/m) 취수공 1공
 - 진 입 도 로 : 진입도로(B=4.0m) L=300.0m
 - 그 라 우 텅 : 전,후열 125공
 - 양 수 장 : 1개소(Φ200mm×90kw×2대) ,송수관로 : 1조 1,500m
 - 취 입 보 : 1조 95m(가동보 20m*2련))
 - 평 야 부 : 용수개거 1조 L=0.48km (01.0×1.0)
 - 부 대 공 : 1식
4.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설계도서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는 곡성군 안전건설과(061-360-846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지구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다음”

토지 세목 조서(곡성)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합계				6필지		15,535	6,517					
1	곡성	옥과	소룡	424	답	4,558	316	정상봉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1-133			
2	곡성	옥과	소룡	439	유	1,217	1,217	김병순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삼오리			
3	곡성	옥과	소룡	426	답	2,133	2,133	진선자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삼오리 89			
4	곡성	옥과	소룡	426-6	답	1,949	1,949	김필식	광주시 북구 두암동 938 대주빌라 17동 101호			
5	곡성	옥과	소룡	427	답	3,578	784	김창희 외 2인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소룡리 570			
6	곡성	옥과	소룡	884-7	답	2,100	118	문의식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208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7호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지정 및 일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국토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지정 내용

- 사업명칭 :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 사업면적 : 2,324,399㎡ (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0 ~ 2019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랜드리버스코리아(주)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량(㎡) (증감비율(%))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324,399	100.0	2,324,399	100.0	-(0.0)	
주거용지	982,722	42.3	997,800	42.9	증15,078(0.6)	
상업용지	29,521	1.3	29,521	1.3	-(0.0)	
녹지용지	876,576	37.7	860,132	37.0	감16,444(0.7)	
공공시설용지	74,987	3.2	74,987	3.2	-(0.0)	
기반시설용지	360,593	15.5	361,959	15.6	증1,366(0.1)	

2. 1단계지구 B, C블럭 실시계획 내용

- 시 행 자 : 랜드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트리폴리스 A-3202
- 사 업 명 : 정남진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B,C블럭 조성사업
-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산94-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4,490㎡(주택39세대, 도로, 녹지,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16. 7~2017. 6
- 사업시행지 위치도 : 게재생략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장흥군 담당부서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현황		비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총계(15필지)				106,564	24,490			
1	기산리	437-3	임	48,694	3,847	장흥군		
2	기산리	산57-4	천	115	93	국토교통부		
3	기산리	산65-14	임	14,975	3,282	장흥군		
4	기산리	산65-18	임	1,579	28	장흥군		
5	기산리	산66	임	8,642	1,540	장흥군		
6	비동리	산94-3	임	15,586	10,955	장흥군		
7	비동리	414	답	3,187	20	장흥군		
8	비동리	412	답	803	400	장흥군		
9	비동리	산94-6	임	1,495	50	장흥군		
10	비동리	409	답	1,640	212	장흥군		
11	비동리	411	답	1,653	159	장흥군		
12	비동리	405	답	3,855	3,568	장흥군		
13	비동리	407	답	1,279	217	장흥군		
14	비동리	406	답	674	113	장흥군		
15	비동리	403	답	2,387	6	장흥군		

○ 재원조달계획

구 분	규 모	자금소요액(천원)	조달방안	비 고
토목설계공사비	1식	8,500,000	사업시행자 100%	-

3. 기타 관계서류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51), 장흥군 건설안전과(☎ 061-860-0465),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061-860-073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8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2015.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
- 면 적 : 1,550,759㎡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산업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대양일반산업단지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 오수중계펌프장 : 목포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16년 → 변경 2008년 ~ 2017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C10 식료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56,423	-	856,423	-	
산업1	54,565	-	54,565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2	58,955	-	58,955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3	31,424	-	31,424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4	82,733	-	82,733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5	48,223	-	48,223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6	81,860	-	81,860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7	90,923	-	90,923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8	89,364	-	89,364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9	55,013	-	55,013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0	54,554	-	54,554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1	46,240	-	46,240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2	20,304	-	20,304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3	33,511	-	33,511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4	48,274	-	48,274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5	17,547	-	17,547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6	42,933	-	42,933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시 지 역	1,550,759	-	1,550,759	100.0	
일반공업지역	1,550,759	-	1,550,759	100.0	산단내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50,759	-	1,550,759	100.0	-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56,423	-	856,423	55.2	-	55.2	
지 원 시 설 용 지	84,346	-	84,346	5.5	-	5.5	
공 공 시 설 용 지	609,990	-	609,990	39.3	-	39.3	
도 로	260,547	-	260,547	16.8	-	16.8	
주 차 장	9,305	-	9,305	0.6	-	0.6	
자동차정류장	91,510	-	91,510	5.9	-	5.9	
공공청사	33,000	-	33,000	2.1	-	2.1	
오수중계펌프장	500	-	500	-	-	-	
공 원	51,432	-	51,432	3.3	-	3.3	
원충녹지	19,551	-	19,551	1.3	-	1.3	
경관녹지	144,145	-	144,145	9.3	-	9.3	

다.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9	11,816	243,010	11	5,297	108,575	4	2,732	67,199	14	3,787	67,236	
대로	4	4,650	133,705	1	851	29,785	1	1,789	53,670	2	2,010	50,250	
중로	13	5,479	95,777	7	3,433	68,660	2	855	12,825	4	1,191	14,292	
소로	12	1,687	13,528	3	1,013	10,130	1	88	704	8	586	2,694	

※ 주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260,547)과의 차이(17,537㎡)는 가각 및 부가차로 면적임

○ 도로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개(대로1류)			1개 노선			4,540 (851)						()는 구역내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4,540 (851)	대1-6 연산동 64-9도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1074-31도	일반 도로	대양 근린공원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국도1호선 우회도로 ()는 구역내연장
소개(대로2류)			1개 노선			1,789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789	대로1-7	대로2-2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소개(대로3류)			2개 노선			2,010						
기정	대로	3	32	25	보조간선	1,596	대로2-19	중로2-7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41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개 (중로1류)		7개 노선			3,433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1,118	대로2-19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174	대로2-19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94	대로2-19	대로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7	20	집산도로	117	대로2-19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8	20	집산도로	1,07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9	20	집산도로	257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0	20	집산도로	199	대로3-32	중로1-76	일반 도로		〃	
소개(중로2류)			2개 노선			855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55	대로3-32	소로3-39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0	중로2-70	대로3-32	일반 도로		〃	
소개(중로3류)			4개 노선			1,191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00	소로1-302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3	94	12	국지도로	460	중로3-93	대로2-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5	12	국지도로	607	중로3-95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6	12	국지도로	24	중로3-95	대로2-19	일반 도로		〃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소로1류)		3개 노선			1,184 (1,013)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224 (53)	대1-6 용해동 578도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7-80호 (1987. 6. 5)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로	1	302	10	국지도로	460	소로1-110	중로3-9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1	304	10	국지도로	500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계 (소로2류)		1개 노선			88						
기정	소로	2	663	8	국지도로	88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기정	소계 (소로3류)		8개 노선			586						
기정	소로	3	398	6	국지도로	22	중로2-70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399	6	국지도로	85	중로3-93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3	400	6	국지도로	38	소로1-302	소로3-3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1	4	특수도로	237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402	4	특수도로	103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3	4	특수도로	55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4	4	특수도로	16	소로1-302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82	6	국지도로	30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소로1-30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305	-	9,305	-	-
기정	80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850대 일원	2,945	-	2,945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12.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81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07전 일원	653	-	653	〃	〃
기정	102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22-3전 일원	3,987	-	3,987	〃	〃
기정	103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40-1전 일원	552	-	552	〃	〃
기정	104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40-36임 일원	1,168	-	1,168	〃	〃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91,510	-	91,510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762-2임 일원	28,519	-	28,519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12.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683-1임 일원	62,991	-	62,991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에 따른 목포시장이 설치하는 공용차고지

2) 공원·녹지(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432	-	51,432	-	-
기정	127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689임 일원	19,026	-	19,026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12.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128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796-7임 일원	18,232	-	18,232	〃	〃
기정	129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006-6전 일원	14,174	-	14,174	〃	〃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00,048 (163,696)	-	200,048 (163,696)		()는 구역내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국도 1호선 대체우회 도로변	55,903 (19,551)	-	55,903 (19,551)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54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006-17전 일원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15,664	-	15,664	전남고시 제2009-372호 (2009.9.18)	〃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940-36임 일원	14,983	-	14,983	〃	〃
기정	56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신93-10임 일원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35,658	-	35,658	〃	〃
기정	57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56-11임 일원 대양산단 북측지구계	2,457	-	2,457	〃	〃
기정	58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97-411유 일원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42,565	-	42,565	〃	〃
기정	59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97-122염 일원 대양 산단내 송전탑 선하부지	32,818	-	32,818	〃	〃

3)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33,000	-	33,000		-
기정	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797-228염 일원	33,000	-	33,00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오수중계 펌프장	목포시 대양동 797-121염	500	-	500	전남고시 제2010-323호 (2010.11.5)	대양일반 산업단지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오·폐수발생량(㎥/일)			처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65	-	3,765	-	-
공업폐수	2,519	-	2,519	각 업체에서 1차 처리후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압송 처리	북항하수처리장 : V=35,000㎥/일
생활오수	1,246	-	1,246		

6) 전기·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기(변경없음)

구분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기타용지	비고
최대(하용)부하 (KW)	69,183	60,881	8,302	
변압기용량 (KVA)	83,634	74,410	9,224	

나) 통신(변경없음)

구분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기타용지	공중전화	비고
회선수	6,000	4,661	1,316	23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	폭원(m)	연장(m)	위치	비고
진입도로	25~30	1,334	· 산정C-단지내 연결 · 산정C램프(L=1,132m, B=6m)	· 대로 3-4호선(미개설 구간) 포함

나.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명칭	수량	규모	위치	비고
오수관거	Ø400mm	L=2,500m	사업대상자-북항하수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Q=7,000㎥	국도1호선 우회도로변	

다.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시설명	현재	증설	증설 후	비고
대양배수지	7,000㎥	-	7,000㎥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계재생략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목포시청(도시개발과 061-270-4242) 및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사업개발본부 061-270-9667, 9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대양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창 호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50, 3층(용해동)

○ 오수중계펌프장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내 산업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유치업종(변경없음)

○ C10 식료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56,423	-	856,423	-	
산업1	54,565	-	54,565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2	58,955	-	58,955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3	31,424	-	31,424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4	82,733	-	82,733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산업5	48,223	-	48,223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6	81,860	-	81,860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7	90,923	-	90,923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8	89,364	-	89,364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9	55,013	-	55,013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0	54,554	-	54,554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1	46,240	-	46,240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2	20,304	-	20,304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3	33,511	-	33,511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4	48,274	-	48,274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5	17,547	-	17,547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6	42,933	-	42,933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50,759	-	1,550,759	100.0	-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56,423	-	856,423	55.2	-	55.2	
지 원 시 설 용 지	84,346	-	84,346	5.5	-	5.5	
공 공 시 설 용 지	609,990	-	609,990	39.3	-	39.3	
도 로	260,547	-	260,547	16.8	-	16.8	
주 차 장	9,305	-	9,305	0.6	-	0.6	
자동차정류장	91,510	-	91,510	5.9	-	5.9	
공공청사	33,000	-	33,000	2.1	-	2.1	
오수중계펌프장	500	-	500	-	-	-	
공 원	51,432	-	51,432	3.3	-	3.3	
완충녹지	19,551	-	19,551	1.3	-	1.3	
경관녹지	144,145	-	144,145	9.3	-	9.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

○ 면 적 : 1,550,759㎡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 정 : 2008년 ~ 2016년(착공일 : 2013. 2. 25, 준공예정일 : 2016. 12. 31)

- 변 경 : 2008년 ~ 2017년 12월 31일(착공일 : 2013. 2. 25, 준공예정일 : 2017. 12. 31)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시 지 역	1,550,759	-	1,550,759	100.0	산단 내
일반공업지역	1,550,759	-	1,550,759	100.0	산단 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대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	1,550,759	-	1,550,759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9	11,816	243,010	11	5,297	108,575	4	2,732	67,199	14	3,787	67,236	
대로	4	4,650	133,705	1	851	29,785	1	1,789	53,670	2	2,010	50,250	
중로	13	5,479	95,777	7	3,433	68,660	2	855	12,825	4	1,191	14,292	
소로	12	1,687	13,528	3	1,013	10,130	1	88	704	8	586	2,694	

※ 주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260,547)과의 차이(17,537㎡)는 가각 및 부가차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개(대로1류)			1개 노선			4,540 (851)						()는 구역내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4,540 (851)	대1-6 연산동 64-9도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1074-31도	일반 도로	대양 근린공원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국도1호선 우회도로 ()는 구역내연장
소개(대로2류)			1개 노선			1,789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789	대로1-7	대로2-2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소개(대로3류)			2개 노선			2,010						
기정	대로	3	32	25	보조간선	1,596	대로2-19	중로2-7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41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개 (중로1류)		7개 노선			3,433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1,118	대로2-19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174	대로2-19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94	대로2-19	대로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7	20	집산도로	117	대로2-19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8	20	집산도로	1,07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9	20	집산도로	257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0	20	집산도로	199	대로3-32	중로1-76	일반 도로		〃	
소개(중로2류)			2개 노선			855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55	대로3-32	소로3-39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0	중로2-70	대로3-32	일반 도로		〃	
소개(중로3류)			4개 노선			1,191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00	소로1-302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3	94	12	국지도로	460	중로3-93	대로2-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5	12	국지도로	607	중로3-95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6	12	국지도로	24	중로3-95	대로2-19	일반 도로		〃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소로1류)		3개 노선			1,184 (1,013)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224 (53)	대1-6 용해동 578도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7-80호 (1987. 6. 5)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로	1	302	10	국지도로	460	소로1-110	중로3-9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1	304	10	국지도로	500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계 (소로2류)		1개 노선			88						
기정	소로	2	663	8	국지도로	88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기정	소계 (소로3류)		8개 노선			586						
기정	소로	3	398	6	국지도로	22	중로2-70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399	6	국지도로	85	중로3-93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3	400	6	국지도로	38	소로1-302	소로3-3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1	4	특수도로	237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402	4	특수도로	103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3	4	특수도로	55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4	4	특수도로	16	소로1-302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82	6	국지도로	30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소로1-30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305	-	9,305	-	-
기정	80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850대 일원	2,945	-	2,945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12.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81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07전 일원	653	-	653	〃	〃
기정	102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22-3전 일원	3,987	-	3,987	〃	〃
기정	103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40-1전 일원	552	-	552	〃	〃
기정	104	노외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940-36임 일원	1,168	-	1,168	〃	〃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91,510	-	91,510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762-2임 일원	28,519	-	28,519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12.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683-1임 일원	62,991	-	62,991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에 따른 목포시장이 설치하는 공용차고지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00,048 (163,696)	-	200,048 (163,696)		()는 구역내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국도 1호선 대체우회 도로변	55,903 (19,551)	-	55,903 (19,551)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54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006-17전 일원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15,664	-	15,664	전남고시 제2009-372호 (2009.9.18)	〃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940-36임 일원	14,983	-	14,983	〃	〃
기정	56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산93-10임 일원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35,658	-	35,658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7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56-11임 일원 대양산단 북측지구계	2,457	-	2,457	〃	〃
기정	58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97-411유 일원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42,565	-	42,565	〃	〃
기정	59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797-122임 일원 대양 산단내 송전탑 선하부지	32,818	-	32,818	〃	〃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432	-	51,432	-	-
기정	127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689임 일원	19,026	-	19,026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12.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128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796-7임 일원	18,232	-	18,232	〃	〃
기정	129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006-6전 일원	14,174	-	14,174	〃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33,000	-	33,000		-
기정	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797-228임 일원	33,000	-	33,00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12.31)	대양일반산 업단지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오수중계 펌프장	목포시 대양동 797-121임	500	-	500	전남고시 제2010-323호 (2010.11.5)	대양일반 산업단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1	-	54,565	1	14,950	
			2	13,239	
			3	13,367	
			4	13,009	
산업2	-	58,955	1	8,199	
			2	9,775	
			3	5,617	
			4	6,656	
			5	5,168	
			6	5,766	
			7	4,720	
			8	4,858	
			9	4,160	
			10	4,036	
산업3	-	31,424	1	6,587	
			2	6,624	
			3	6,667	
			4	3,848	
			5	2,649	
			6	2,657	
			7	2,392	
산업4	-	82,733	1	12,465	
			2	12,280	
			3	12,419	
			4	12,500	
			5	12,375	
			6	11,193	
			7	9,501	
산업5	-	48,223	1	2,950	
			2	2,917	
			3	6,127	
			4	4,792	
			5	10,858	
			6	10,192	
			7	10,387	

- 분할 가능
(1,000㎡이상)
- 합병 가능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6	-	81,860	1	16,620	• 분할 가능 (1,000㎡이상) • 합병 가능
			2	16,637	
			3	20,682	
			4	6,914	
			5	6,914	
			6	7,047	
			7	7,046	
산업7	-	90,923	1	4,476	
			2	4,474	
			3	8,932	
			4	8,886	
			5	8,913	
			6	4,893	
			7	4,736	
			8	4,476	
			9	4,470	
			10	8,820	
			11	8,995	
			12	8,964	
			13	4,891	
			14	4,997	
산업8	-	89,364	1	4,896	
			2	4,880	
			3	8,602	
			4	8,563	
			5	8,610	
			6	8,689	
			7	5,251	
			8	5,221	
			9	8,695	
			10	8,657	
			11	8,628	
			12	8,672	
산업9	-	55,013	1	6,977	
			2	6,991	
			3	6,967	
			4	3,178	
			5	3,131	
			6	7,010	
			7	7,182	
			8	7,196	
			9	3,252	
			10	3,129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10	-	54,554	1	3,100	
			2	3,115	
			3	6,864	
			4	6,872	
			5	6,835	
			6	3,220	
			7	3,298	
			8	7,176	
			9	7,062	
			10	7,012	
산업11	-	46,240	1	7,802	
			2	7,840	
			3	7,342	
			4	7,732	
			5	7,991	
			6	4,081	
			7	3,452	
산업12	-	20,304	1	4,089	
			2	4,080	
			3	4,039	
			4	4,053	
			5	4,043	
산업13	-	33,511	1	11,136	
			2	11,799	
			3	10,576	
산업14	-	48,274	1	4,468	
			2	9,769	
			3	8,965	
			4	7,738	
			5	5,254	
			6	4,362	
			7	3,892	
			8	3,826	
산업15	-	17,547	1	8,783	
			2	8,764	
산업16	-	42,933	1	14,316	
			2	14,300	
			3	14,317	

• 분할 가능
(1,000m²이상)
• 합병 가능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지원1	-	5,156	1	607	
			2	625	
			3	625	
			4	742	
			5	700	
			6	625	
			7	625	
			8	607	
지원2	-	3,931	1	536	• 분할 불가능 • 합병 가능
			2	536	
			3	1,653	
			4	603	
			5	603	
지원3	-	13,572	1	1,469	
			2	1,478	
			3	1,876	
			4	1,876	
			5	1,867	
			6	1,876	
			7	1,866	
			8	1,264	
지원4	-	12,060	1	1,464	• 분할 불가능
			2	1,830	
			3	8,766	• 분할가능 (단 2필지) • 합병 가능
지원5	-	9,916	1	725	• 분할 불가능 • 합병 가능
			2	723	
			3	721	
			4	720	
			5	720	
			6	499	
			7	499	
			8	662	
			9	664	
			10	662	
			11	665	
			12	665	
			13	664	
			14	663	
			15	664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지원6	-	3,524	1	1,200	
			2	1,031	
			3	794	
			4	499	
지원7	-	4,588	1	1,186	
			2	1,186	
			3	1,186	
			4	1,030	
지원8	-	4,829	1	232	
			2	233	
			3	233	
			4	232	
			5	232	
			6	233	
			7	233	
			8	233	
			9	233	
			10	234	
			11	234	
			12	232	
			13	340	
			14	333	
			15	335	
			16	334	
			17	232	
			18	231	
			19	230	
지원9	-	8,536	1	1,089	• 분할 불가능 • 합병 가능
			2	1,557	
			3	1,503	
			4	1,506	
			5	1,492	
			6	1,389	
지원10	-	18,234	-	18,234	• 분할 가능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9,305	-	9,305	
주80	-	2,945	-	2,945	
주81	-	653	-	653	
주102	-	3,987	-	3,987	
주103	-	552	-	552	
주104	-	1168	-	1,168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오수12	-	500	-	500	

5)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91,510	-	91,510	
자동차정류장6	-	28,519	-	28,519	
자동차정류장7	-	62,991	-	62,991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33,000	-	33,000	
청사33	-	33,000	-	33,00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산업 1~3	용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10 : 식품품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 <tr> <td>보조색</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 </table>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산업 4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리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6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H52 :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료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인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r><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5, 7, 8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심사를 득한 업종으로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 - 제한업종 · C10 : 식품품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6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3 : 비금속광물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연마재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산업9, 10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H52 :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확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산업11, 12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 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리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확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14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3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 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리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확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5, 16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 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 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 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 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G 3/4</td><td colspan="2">5GY 3/4</td></tr> </table>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지원 1~7, 9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 </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자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지원 8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의 경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 ,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단독주택의 경우 60% 이하)													
		용적률		350%이하(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하)													
		높이/세대수		최고층수 : 5층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6세대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 </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지원 10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 <tr> <td>보조색</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 </table>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주80-81, 102~10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tr><td rowspan="2">주조색</td><td></td><td></td><td></td><td></td></tr><tr><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tr><td rowspan="2">보조색</td><td></td><td></td><td></td><td></td></tr><tr><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tr><td rowspan="2">강조색</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 펌프장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오수1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5) 자동차 정류장(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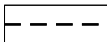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자동차 정류장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자동차정류장 6-7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간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공공청사 33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간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산업 1~15	획지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필지가 되도록 한다. •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은 1,000㎡이상 되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	기본 원칙	• 건축물의 재료, 형태,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원칙으로 함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가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형광색 등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며 사용가능한 색의 수를 4색 이내로 제한
			가로형 간판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기본형으로 함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요 도로에 접한 입면의 상단부의 적정 위치에 설치 • 간판 조명은 채널방식으로 LED를 사용하여 단색으로 설치 • 조명은 백색 광원을 기준으로하며 점멸 등 효과 금지
			지주이용 간판	•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지원 1~10	획지 분할 및 합병	• 지원시설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수 없다. 다만 건축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 지원10BL 및 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제외) • 획지의 합병은 인접대지에 대하여 합병할 수 있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획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단 2필지) - 도면표시 : 대지분할가능선 				
		옥외 광고물	<table><tr><td>가로형 간판</td><td>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가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r><td>돌출형</td><td> • 간판의 아래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able>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가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래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가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래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목포시건축조례 기준에 의한다.						

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12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9,206.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163.0	-	-	6.11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47.0	-	-	0.25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816.0	-	-	93.64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026.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163.0	-	-	-	
		도 로	1,163.0	-	-	-	
휴양 시설	소 계		47.0	-	-	-	
		휴게쉼터1	22.0		-	-	
		휴게쉼터2	25.0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816.0	-	-	-	
		녹 지	17,816.0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163.0	-	-	-	
소 로	진1	3	277	830.0	진입로	대상지경계	대상지경계	
〃	진2	2	248	333.0	산책로	대상지경계	진입로1	

2) 1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232.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225.0	-	-	6.72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132.0	-	-	0.72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6,875.0	-	-	92.56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232.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225.0	-	-	-	
		도 로	852.0	-	-	-	
		광 장	373				
휴양 시설	소 계		132.0	-	-	-	
		휴게쉼터1	44.0		-	-	
		휴게쉼터2	48.0				
		휴게쉼터3	40.0				
	(1)	등의자	-	8EA			
	(1)	파고라	-	2EA			
	(1)	평의자	-	9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6,875.0	-	-	-	
		녹 지	16,875.0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				852.0				
소 로	진1	4	213	852.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광장	

3) 1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4,174.0	-	-	100.0	
기본시설	도로, 광장 등	874.0	-	-	6.17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50.0	-	-	0.35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3,250.0	-	-	93.48	

나) 세부시설

○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4,174.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874.0	-	-	-	
		도 로	674.0	-	-	-	
		광 장	200.0				
휴양 시설	소 계		50.0	-	-	-	
		휴게쉼터1	23.0		-	-	
		휴게쉼터2	27.0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2EA			
	(1)	평의자	-	6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3,250.0	-	-	-	
		녹 지	13,250.0	-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674.0				
소 로	진1	3.0	20.0	60.0	진입로	대상지경계	광장	
〃	산1	2.0	308.0	614.0	산책로	광장	산책로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련도서 열람방법
 - 목포시청(도시개발과 061-270-4242) 및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사업개발본부 061-270-9667, 9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9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1. 지정목적

-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되고 있어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개선 및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정대상 악취배출시설 현황

일련 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최초 허가일	대상시설
1	(주)청록바이오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63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02. 02. 21	비료 제조시설(공동 생산시설 포함) 일체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0호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9호(2016. 2. 4)로 변경 고시한 강진 환경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지정 - 강진 환경산업단지

변경 - 강진 산업단지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면적 : 지정 - 656,854㎡

변경 - 655,26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산업기반 육성으로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모

○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통해 전남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 지역산업·산업활동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동력(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산업 유치로 지역발전 극대화 도모

○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특화 유도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지정 - 2008년 ~ 2016년

변경 - 2008년 ~ 2017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공영개발(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

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업종생략(산업시설 면적의 30% 이내)

※ 제한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C13),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410,697	410,318	100.0	100.0	
환경 산업		111,463	111,430	27.2	27.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463	111,430	27.2	27.2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98,515	98,376	24	24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8,515	98,376	24	24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음식료품 산업		32,422	32,411	7.9	7.9	
C10	식료품 제조업	32,422	32,411	7.9	7.9	
C11	음료 제조업					
음식료품 및 펄프, 종이제품 관련 산업		31,108	31,021	7.6	7.6	
C10	식료품 제조업	31,108	31,021	7.6	7.6	
C11	음료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창고, 운송관련 산업		22,380	22,340	5.4	5.4	
C10	식료품 제조업	22,380	22,340	5.4	5.4	
C11	음료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 생략		114,809	114,740	27.9	27.9	
제한업종 : C13, C14, C15, C18, C19		114,809	114,740	27.9	27.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656,854	감) 1,587	655,267	100%	
산업용지	410,697	감) 379	410,318	62.6%	
환경산업	111,463	감) 33	111,430	17.0%	
신재생에너지산업	98,515	감) 139	98,376	15.0%	
식음료 및 물류, 종이관련 산업	85,910	감) 138	85,772	13.1%	
업 종 생 략	114,809	감) 69	114,740	17.5%	
지원시설용지	60,371	감) 66	60,305	9.2%	
환경산업 진흥원	39,670	감) 4	39,666	6.1%	
지원시설용지	20,701	감) 62	20,639	3.1%	
공공시설용지	185,786	감) 1,142	184,644	28.2%	
공원/녹지	79,742	감) 1,339	78,403	12.0%	
공원	6,188	증) 10	6,198	0.9%	
완충녹지	69,856	감) 1,340	68,516	10.5%	
공공공지	3,698	감) 9	3,689	0.6%	
도로	81,852	증) 201	82,053	12.5%	
주차장	4,498	증) 20	4,518	0.7%	
수질오염방지시설	3,900	감) 62	3,838	0.6%	
전기공급설비	3,849	증) 14	3,863	0.6%	
유수지	10,300	증) 27	10,327	1.6%	
수도공급설비	1,645	감) 3	1,642	0.2%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 (m)	기 정			변 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	-	14	5,221	81,852	14	5,216	82,05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일반 도로	중로	계	-	9	4,978	9	4,973	79,818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류	15~19	7	4,515	7	4,510	73,963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류	12	2	463	2	463	5,855	
일반 도로 / 특수 도로	소로	계	-	5	243	5	243	2,235	
		1류	10	1	34	1	34	332	
		2류	8	4	209	4	209	1,903	

주) 도로면적 합계는 가각부를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9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4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2	15	집산 도로	1,099	중로2-51 (송학리 717-1)	중로2-55 (명산리 650-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170	중로2-51 (송학리 산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도로	291	중로2-51 (송학리 233)	중로2-52 (명산리산142-2)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5	15	집산 도로	624	중로2-51 (명산리산139-1)	소로2-354 (명산리 730)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도로	932	중로2-51 (송학리 산5)	중로2-51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7	15	집산 도로	280	중로2-51 (송학리 234)	중로2-56 (송학리802-2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1	12	국지 도로	262	중로2-52 (송학리 720-2)	중로2-52 (송학리 716-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2	12	국지 도로	201	중로2-52 (송학리 720-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1	91	10	보행자 도로	34	중로3-201 (송학리 718)	북측구역계 (송학리718-7)	특수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27	중로2-51 (송학리 211-3)	남측구역계 (송학리 68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67	중로2-52 (송학리 산1-4)	북측구역계 (명산리산142-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58	중로2-55 (명산리 산148)	유수지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7	중로2-56 (송학리 152-2)	수도공급설비 (송학리 15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498	증) 20	4,518		
변경	8	주차장	중로2-57호선변 (송학리 235)	3,075	증) 25	3,100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129면)
변경	9	주차장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0-5)	1,423	감) 5	1,418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57면)

2) 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계획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6,188	증) 10	6,198		
변경	2	산단2공원	소공원	중로3-1호선변 (송학리 720-1)	2,752	감) 23	2,72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3	산단3공원	소공원	중로3-2호선변 (송학리 721)	3,436	증) 33	3,46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69,856	감) 1,340	68,516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서측구역계 (송학리 714)	8,073	감) 1,187	6,886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718-7)	1,312	감) 117	1,195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9-1)	1,423	감) 23	1,400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7-3)	9,177	감) 20	9,157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212-9)	2,721	감) 211	2,500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명산리 468-1)	34,394	증) 265	34,659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5)	12,756	감) 37	12,719	전고211호1 1.07.13	일반 공업지역

다)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698	감) 9	3,686		
변경	3	공공공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1465-2)	1,205	증) 34	1,239	전고211호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4	공공공지	하천변 (명산리 산42-4)	951	증) 54	1,005	전고211호 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6	공공공지	(송학리 산4)	537	감) 33	504	-	일반 공업지역
변경	7	공공공지	(송학리 234)	537	감) 38	499	-	일반 공업지역
변경	8	공공공지	(송학리 171-2)	468	감) 26	442	-	일반 공업지역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수도공급설비(배수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45	감) 3	1,642		
변경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1)	1,645	감) 3	1,64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전기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849	증) 14	3,863		
변경	4	전기공급설비	중로2-55호선변 (명산리 산47-1)	3,849	증) 14	3,86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4) 방재시설계획(변경)

가) 우수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300	증) 27	10,327		
변경	1	우수지	저류시설	북측구역계 (명산리 466)	10,300	증) 27	10,32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900	감) 62	3,838		
변경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중로 2-55호선변 (명신리 728-1)	3,900	감) 62	3,838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다.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1)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용 량(㎡/일)			공급수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9	-	3,259	-	
공업용수	2,902	-	2,902	장흥댐 호소수	
생활용수	357	-	357	장흥댐 호소수	

2)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 (㎡/일)			총오수량 (㎡/일)			오수량 (㎡/일)			지하수유입량 (㎡/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85	-	3,285	702	-	702	638	-	638	65	-	65
공업폐수	2,902	-	2,902	323	-	323	293	-	293	30	-	30
생활오수	322	-	322	319	-	319	290	-	290	29	-	29
송학마을생활오수	61	-	61	60	-	60	55	-	55	6	-	6

3) 전력·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 요 량			공급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력(kVA/년)	26,394	-	26,394	지구내 변전소	
통신(회선)	1,451	-	1,451	KT 강진지점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진입도로 (변경)

구 분	폭원(m)		길이(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본선	19.0	18.5	732.0	1,260	-
국도2호선 연결로	6.0	6.0	1,300.0	1,300.0	통로암거포함(35.0m×10.5m)
교량	19.0	19.0	16.0	16.0	
군도 연결로	8.0	8.0	405.0	405.0	

나. 용수공급시설 (변경)

구 분	내 용	
	기정	변경
송수관로	D250mm, L=1,990m	D250mm, L=2,210m
배수지	V=1,710m ³ /일	V=1,800m ³ /일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

구 분	소요면적(m ²)		소요부지규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오·폐수처리시설	3,900	3,838	BXL(7:3)	BXL(6:4)	Q = 1,316m ³ /일	Q = 1,200m ³ /일
			94m×40m	76m×50m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국비 및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개발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강진군 미래산업과 (061-430-30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기정 : 강진 환경산업단지
- 변경 : 강진 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후광대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지역산업기반 육성으로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모
-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통해 전남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 지역산업·산업활동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동력(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산업 유치로 지역발전 극대화 도모
-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특화 유도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면적 : 기정 - 656,854㎡
변경 - 655,267㎡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6년
변경 - 2008년 ~ 2017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656,854	감) 1,587	655,267	100%	
산업용지	410,697	감) 379	410,318	62.6%	
환경산업	111,463	감) 33	111,430	17.0%	
신재생에너지산업	98,515	감) 139	98,376	15.0%	
식음료 및 물류, 종이관련 산업	85,910	감) 138	85,772	13.1%	
업 종 생 략	114,809	감) 69	114,740	17.5%	
지원시설용지	60,371	감) 66	60,305	9.2%	
환경산업 진흥원	39,670	감) 4	39,666	6.1%	
지원시설용지	20,701	감) 62	20,639	3.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공시설용지	185,786	감) 1,142	184,644	28.2%	
공원/녹지	79,742	감) 1,339	78,403	12.0%	
공원	6,188	증) 10	6,198	0.9%	
완충녹지	69,856	감) 1,340	68,516	10.5%	
공공공지	3,698	감) 9	3,689	0.6%	
도로	81,852	증) 201	82,053	12.5%	
주차장	4,498	증) 20	4,518	0.7%	
수질오염방지시설	3,900	감) 62	3,838	0.6%	
전기공급설비	3,849	증) 14	3,863	0.6%	
유수지	10,300	증) 27	10,327	1.6%	
수도공급설비	1,645	감) 3	1,642	0.2%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1) 강진군 용도지역 결정 총괄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63,223,000 (62,978,318)	- (감)24,788	563,223,000 (62,953,530)	100.0	() : 해면
도시지역	27,041,260 (1,700,118)	감) 1,587	27,039,673 (1,700,118)	4.8	() : 해면
주거지역	3,876,552	-	3,876,552	0.7	
상업지역	604,812	-	604,812	0.1	
공업지역	1,417,731 (60,350)	감) 1,587	1,416,144 (60,350)	0.3	() : 해면
일반공업지역	1,196,499	감) 1,587	1,194,912	0.2	
준공업지역	221,232 (60,350)	-	221,232 (60,350)	0.1	() : 해면
녹지지역	19,856,327 (353,930)	-	19,856,327 (353,930)	3.5	() : 해면
미지정	1,285,838 (1,285,838)	-	1,285,838 (1,285,838)	0.2	() : 해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관리지역	114,134,822	-	114,134,822	20.3	
보전관리지역	47,688,554	-	47,688,554	8.5	
생산관리지역	18,401,958	-	18,401,958	3.3	
계획관리지역	48,064,310	-	48,064,310	8.5	
미세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312,948,170	증) 1,587	312,949,757	55.5	
자연환경보전지역	109,078,748 (61,253,412)	-	109,078,748 (61,253,412)	19.4	() : 해면

※주 : 용도지역결정변경은 강진 산업단지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사항임

주 : () 해면면적의 합계는 오차정정 사항임

2) 강진 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계	656,854	감) 1,587	655,267	100.0	
도시지역	656,854	감) 1,587	655,267	100.0	
공업지역	656,854	감) 1,587	655,267	100.0	
일반공업지역	656,854	감) 1,587	655,267	100.0	

3)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716-9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농림지역	1,587	80	•확정측량으로 인한 경계부 분할측량반영(감 1,58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	강진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656,854	감) 499	655,26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656,854	• 확정측량으로 인한 경계부 분할측량반영(감 1,587㎡)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 (m)	기 정			변 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	-	14	5,221	81,852	14	5,216	82,053	
일반 도로	중로	계	-	9	4,978	79,607	9	4,973	79,818	
		2류	15~19	7	4,515	73,752	7	4,510	73,963	확정측량에 의한면적변경
		3류	12	2	463	5,855	2	463	5,855	
일반 도로 / 특수 도로	소로	계	-	5	243	2,245	5	243	2,235	
		1류	10	1	34	342	1	34	332	보행자전용도로
		2류	8	4	209	1,903	4	209	1,903	

※ 주 : 도로면적 합계는 가각부를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9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4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2	15	집산 도로	1,099	중로2-51 (송학리 717-1)	중로2-55 (명산리 650-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170	중로2-51 (송학리 산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도로	291	중로2-51 (송학리 233)	중로2-52 (명산리산142-2)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5	15	집산 도로	624	중로2-51 (명산리산139-1)	소로2-354 (명산리 730)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도로	932	중로2-51 (송학리 산5)	중로2-51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7	15	집산 도로	280	중로2-51 (송학리 234)	중로2-56 (송학리 802-2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1	12	국지 도로	262	중로2-52 (송학리 720-2)	중로2-52 (송학리 716-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2	12	국지 도로	201	중로2-52 (송학리 720-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1	91	10	보행자 도로	34	중로3-201 (송학리 718)	북측구역계 (송학리 718-7)	특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27	중로2-51 (송학리 211-3)	남측구역계 (송학리 68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67	중로2-52 (송학리 산1-4)	북측구역계 (명산리산142-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58	중로2-55 (명산리 산148)	유수지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소로	2	354	8	국지 도로	25	중로2-55 (명산리 산148)	동측구역계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7	중로2-56 (송학리 152-2)	수도공급설비 (송학리 15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51	중로 2-51	•연장 축소 - L=1,119 → 1,114m	•확정측량에 의한 연장 축소

나) 주차장계획 (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498	증) 20	4,518		
변경	8	주차장	중로2-57호선변 (송학리 235)	3,075	증) 25	3,100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129면)
변경	9	주차장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0-5)	1,423	감) 5	1,428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57면)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주차장	• 면적변경(증 25㎡)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주차장	• 면적변경(감 5㎡)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공원계획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6,188	증 10	6,198		
변경	2	산단2공원	소공원	중로3-201호선변 (송학리 720-1)	2,752	감 23	2,72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3	산단3공원	소공원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1)	3,436	증 33	3,46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산단2공원	• 면적 변경(감 2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산단3공원	• 면적 변경(증 3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녹지계획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9,856	감 1,340	68,516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서측구역계 (송학리 714)	8,073	감 1,187	6,88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718-7)	1,312	감 117	1,19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9-1)	1,423	감 23	1,4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7-3)	9,177	감 20	9,15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212-9)	2,721	감 211	2,5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명산리 468-1)	34,394	증 265	34,65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5)	12,756	감 37	12,71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1,187㎡)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9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117㎡)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0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2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20㎡)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2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211㎡)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	완충녹지	• 면적 변경 (증 265㎡)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5	완충녹지	• 면적 변경 (감 37㎡)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98	감) 9	3,689		
변경	3	공공공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1465-2)	1,205	증) 34	1,23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4	공공공지	하천변 (명산리 산142-4)	951	증) 54	1,00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6	공공공지	(송학리 산4)	537	감) 33	504	-	일반 공업지역
변경	7	공공공지	(송학리 234)	537	감) 38	499	-	일반 공업지역
변경	8	공공공지	(송학리 171-2)	468	감) 26	442	-	일반 공업지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공공지	• 면적변경(증 34㎡)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공공공지	• 면적변경(증 54㎡)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6	공공공지	• 면적변경(감 3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7	공공공지	• 면적변경(감 38㎡)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8	공공공지	• 면적변경(감 26㎡)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45	감) 3	1,462		
변경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1)	1,645	감) 3	1,46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수도공급설비	• 면적감소(감 3㎡)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전기공급설비 (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849	증) 14	3,863		
변경	4	전기공급설비	중로2-55호선변 (명산리 산147-1)	3,849	증) 14	3,86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전기공급설비	• 면적변경(증 21㎡)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방재시설계획 (변경)

가) 유수지 (변경)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300	-	10,30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북측구역계 (명산리 466)	10,300	-	10,3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5)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900	감) 62	3,838		
변경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중로 2-55호선변 (명산리 728-1)	3,900	감) 62	3,838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수질오염 방지시설	• 면적변경(감 62㎡)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410,697		410,697		합 계		410,318		410,318	
A (산업시설 용지) [A1 ~ A13]	A1	48,212	1	48,212	산업시설용지	A (산업시설 용지) [A1 ~ A13]	A1	48,272	1	48,272	산업시설용지
	A2	50,303	1	50,303	산업시설용지		A2	50,104	1	50,104	산업시설용지
	A3	57,539	1	57,539	산업시설용지		A3	57,533	1	57,533	산업시설용지
	A4	38,991	1	38,991	산업시설용지		A4	38,963	1	38,963	산업시설용지
	A5	14,933	1	14,933	산업시설용지		A5	14,934	1	14,934	산업시설용지
	A6	31,108	1	31,108	산업시설용지		A6	31,021	1	31,021	산업시설용지
	A7	22,380	1	22,380	산업시설용지		A7	22,340	1	22,340	산업시설용지
	A8	9,979	1	9,979	산업시설용지		A8	9,964	1	9,964	산업시설용지
	A9	21,979	1	21,979	산업시설용지		A9	21,972	1	21,972	산업시설용지
	A10	23,902	1	23,902	산업시설용지		A10	23,871	1	23,871	산업시설용지
	A11	23,902	1	23,902	산업시설용지		A11	23,877	1	23,877	산업시설용지
	A12	45,026	1	45,026	산업시설용지		A12	45,020	1	45,020	산업시설용지
	A13	22,443	1	22,443	산업시설용지		A13	22,447	1	22,447	산업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변경)

가) 근린생활시설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20,701		20,701		합 계		20,639		20,639	
B (지원시설용지) [B1~B4]	B1	3,829	1	645	후생지원	B (지원시설 용지) [B1~B4]	B1	3,819	1	643	후생지원
			2	645	후생지원				2	643	후생지원
			3	604	후생지원				3	602	후생지원
			4	645	후생지원				4	643	후생지원
			5	645	후생지원				5	644	후생지원
			6	645	후생지원				6	644	후생지원
	B2	6,636	1	922	후생지원		B2	6,604	1	913	후생지원
			2	751	후생지원				2	748	후생지원
			3	670	후생지원				3	668	후생지원
			4	525	후생지원				4	523	후생지원
			5	1,029	후생지원				5	1,024	후생지원
			6	665	후생지원				6	664	후생지원
			7	699	후생지원				7	697	후생지원
			8	665	후생지원				8	663	후생지원
			9	710	후생지원				9	702	후생지원
	B3	6,590	1	702	후생지원		B3	6,575	1	702	후생지원
			2	727	후생지원				2	727	후생지원
			3	764	후생지원				3	764	후생지원
			4	727	후생지원				4	727	후생지원
			5	818	후생지원				5	818	후생지원
			6	927	후생지원				6	927	후생지원
			7	947	후생지원				7	947	후생지원
			8	978	후생지원				8	978	후생지원
	B4	3,646	1	587	후생지원		B4	3,641	1	587	후생지원
			2	615	후생지원				2	615	후생지원
			3	615	후생지원				3	615	후생지원
			4	615	후생지원				4	615	후생지원
			5	615	후생지원				5	615	후생지원
			6	599	후생지원				6	599	후생지원

나) 환경산업진흥원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39,670		39,670		합 계		39,666		39,666	
C (환경산업 진흥원)	C1	39,670	1	39,670	기술센터	C (환경산업 진흥원)	C1	39,666	1	39,666	기술센터

3) 공공시설용지 (변경)

가) 주차장용지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4,498		4,498		합 계		4,518		4,518	
E (주차장용지) [E1-E2]	E1	3,075	1	3,075	주차장	E (주차장용지) [E1-E2]	E1	3,100	1	3,100	
	E2	1,423	1	1,423	주차장		E2	1,418	1	1,418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산업시설 (A1~A12)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 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A11, A12만 적용)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율	○ 350%이하
		높 이	-
		건축 제한	-
		배치	○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 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색채	○ 입면특화권역(조선기자재 산업) : A1 ~ A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Y, RP, B계열 ○ 조망권역(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 : A3 ~ A1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5PB, 7.5BG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A11 ~ A12 -중로 2-54, 55호선변으로부터 8m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변경)

가)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지원시설 (B1-B4)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니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 마목의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기목의 주차장, 니목의 세차장, 라목의 검사장, 바목의 정비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건물의 주방향을 주도로를 향해 배치함 ○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 지붕 형태는 슬라브형 지양,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권장 ○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권장
		색채		○ 랜드마크권역 : B1-B4 - 주조색: 10YR, 보조색·강조색: 5YR, 10YR, 2.5GY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15도로변으로부터 2m

나) 환경산업진흥원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환경산업진흥원 (C1)	용 도	허용용도	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진흥원 내 입주기업에서 연구개발된 제품의 시험생산·제조 및 시제품제작·판매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율		○ 35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랜드마크권역(C1) - 주조색: 10YR, 보조색·강조색: 5YR, 10YR, 2.5GY계열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주차장 (E1-E2)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함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산업시설 A1-A1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2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 시각적 차폐감 제고 및 친환경부지조성을 위해 중로 2-54, 55호선변 A11, A12블록에는 건축한계선 8m를이격하여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	지원시설 B1-B4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 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3) 환경산업진흥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	환경산업 진흥원 C1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4)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	주차장 E1~E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5) 기타 사항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건물·가로경관과 통합된 디자인 지향 ■ 명료화, 단순화, 일체화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적용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기준을 따름
가이드라인 지침	■ 가로형 간판 • 입체형 간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물 정면부 3층 이하에 설치 •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 설치 • 건물명을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폭의 1/2 이내 설치 • 건물명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1/4 이내 설치 ■ 돌출형(세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설치 • 4층 이상 10층 이내 설치하고 건물 전면 폭과 상관없이 1줄만 설치 가능 ■ 지주이용간판 • 건물이 5층 이상이거나 업소의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 설치 가능 •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1개면의 최대면적은 5㎡ 이내, 총 면적 20㎡ 이내로 설치 가능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도면 게재 생략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강진군 미래산업과(061-430-309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1호

영북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북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10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노후된 방조제를 항구적 시설로 개보수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북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위 치 :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북리 일원
 - 수혜면적 : 46.1ha
 - 사업내용 : 방조제 보수·보강(L=1,126m), 파라펫 설치(L=306m), 배수문 보수(2조) 등
 - 사 업 비 : 1,782,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18. 12월(24개월)
 - 시 행 자 : 강 진 군 수
3.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이 조서와 그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주 소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 번						
계	8 필지					22,265	2,940			
1	강진	칠량	영북	신86-44	임	135	15	강 진 군		
2	강진	칠량	영북	636-2	답	10,596	49	강진군 칠량면 영북리 665	조호순	
3	강진	칠량	영북	신87	임	6,942	1,705	강 진 군		
4	강진	칠량	영북	628-10	전	1,124	442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346	정연근	
5	강진	칠량	영북	628-11	전	314	121	국토교통부		
6	강진	칠량	영북	628-12	전	922	481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345	정금주	
7	강진	칠량	영북	628-13	전	698	106	국토교통부		
8	강진	칠량	영북	628-14	전	1,534	21	여주시 봉계동 11 대광오투빌 110-1203	정광근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과 강진군 안전건설과(☎ 061-430-339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명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무안군수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위 치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일원				
처리용량 (㎥/일)	25톤/일				
처리공법	FNR공법				
처리구역면적	0.656km ²				
사업시행기간	2016. 12. ~ 20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면적(㎡)
	다		음		

※ 관계 도서 공람장소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1-450-4145)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3필지		3,363	452			
1	몽탄면 명산리	812-137	답	860	287	전라남도		
2	몽탄면 명산리	812-112	답	1,341	105	전라남도		
3	몽탄면 명산리	812-113	답	1,162	60	무안군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3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장흥군수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일원				
처리용량 (㎥/일)	40톤/일				
처리공법	BRC공법				
처리구역면적	0.26㎢				
사업시행기간	2017. 1. ~ 2018.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면적(㎡)
	다		음		

※ 관계 도서 공람장소 : 장흥군 수도사업소 (061-860-0747)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필지		1,000	995			
1	용산면 인암리	719-13	답	1,000	995	장흥군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5호

대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시행중인 대안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대안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노후저수지 개보수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기반 구축
 -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지내
 - 수혜면적 : 71.3(대안제 39.8 ha, 평금제 31.5ha)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개보수
 - 사업기간 : 2015. 10. ~ 2017. 12.
 - 사 업 비 : 2,738백만원
4. 시행계획(변경)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지역개발부(☎061-350-658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토지 세목(변경)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의 종류
합계				44필지		95,994	6,035	8,089					
1	영광	대마	성산	산111-1	도	3,826	270	27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영광	대마	성산	1335-5	도	1,027	45	45	국(건설부)				
3	영광	대마	성산	1313-32	구	1,101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영광	대마	성산	1382-11	구	1,320	10	10	국 (농림수산부)				
5	영광	대마	성산	1385-2	도	3,291	665	665	국 (농림수산부)				
6	영광	대마	성산	1383-2	구	2,014	10	10	국 (농림수산부)				
7	영광	대마	성산	324-1	구	550	95	9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영광	대마	성산	325-2	구	43	45	4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	영광	대마	성산	1313-27	구	4,071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영광	대마	성산	307-1	답	697	0	697	이장환	대마면 성산리 180			
11	영광	대마	성산	307-6	답	362	70	362	이장환	대마면 성산리 180			
12	영광	대마	성산	307-3	제	2,770	435	43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영광	대마	성산	307-5	제	5	5	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	영광	대마	성산	1323	도	278	40	40	국(농림수산부)				
15	영광	대마	성산	1313-9	구	1,333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영광	대마	성산	303-3	제	113	65	6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영광	대마	성산	303-2	제	129	130	12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영광	대마	성산	산95-2 (300-4)	임	782	140	173*1/3	권성협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상금리 214			
	영광	대마	성산					173*1/3	권복강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591			
	영광	대마	성산					173*1/3	권점규	고창군 성송면 강금리 105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의 종류
19	영광	대마	성산	산95-6	임	20	20	20*1/3	권성협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상금리 214			
	영광	대마	성산					20*1/3	권복강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591			
	영광	대마	성산					20*1/3	권점규	고창군 성송면 강금리 105			
20	영광	대마	성산	산95-7	제	138	345	13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영광	대마	성산	산85 (300-3)	임	15,811	560	578*17/3 0	김태형	대구 북구 산격동 1423-6			
								578* 13/30	정관섭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29	이한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16-139	가압류
											주식 회사 국민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가압류
											삼성 세무서		압류
											박미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6-1505	근저 당권
22	영광	대마	성산	산85-1	유	2,182	200	2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영광	대마	성산	183-1 (183-4)	전	1,065	155	163	김동선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상금리 234			
24	영광	대마	성산	182-3	구	354	190	19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5	영광	대마	성산	1321	도	823	25	25	국(건설부)				
26	영광	대마	성산	163-2	제	592	225	592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27	영광	대마	성산	163-1	유	344	55	55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28	영광	대마	성산	170	묘	251	15	251	김동옥				변경
29	영광	대마	성산	171-2	제	205	60	6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영광	대마	성산	169-1	유	1,983	115	11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	영광	대마	성산	169-2	제	142	65	6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의 종류
32	영광	대마	성산	1313	구	36,604	165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영광	대마	성산	129	전	66	30	66	전재만	대마면 성산리 731			
34	영광	대마	성산	1320	도	677	10	10	국(건설부)				
35	영광	대마	성산	124-2	제	185	70	185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6	영광	대마	성산	84-3	유	1,829	680	68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	영광	대마	성산	85-3	제	179	180	17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8	영광	대마	성산	85 (85-4)	답	2,588	30	50	김태천	전북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325			합유
									김진성	전북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353-1			
									김성일	전북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345			
									김영중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131 사직스카이아파트 301-208			
									김준용	전북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336-1			
39	영광	대마	성산	84-5	제	258	150	15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0	영광	대마	성산	84-1 (84-7)	답	3,687	100	101	유동필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821			
41	영광	대마	성산	84-2	유	512	115	512	유달현	전북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89			
42	영광	대마	성산	1314	도	1,415	65	65	국(건설부)				
43	영광	대마	성산	81-2	유	337	35	3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4	영광	대마	성산	산95-5	임	35	0	35	영광군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변경사유

- 신대배후단지 입주민 증가에 따른 영아(0~2세)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용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변경

◆ 근거 법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주요 변경 내용 : 다음

◆ 열람 및 문의

-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청 투자유치담당관(061-286-5161) 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변경 주요 내용
•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공공청사용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 면 적 : 2,903,919.9㎡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
- 시행기간 : 2003년~2013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5.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명	총 사업비	사업비 재원별			
			국 비	지방비	자본금(SPC)	법인전입
	신대배후단지	5,600 (100%)	-	-	300 (5.3%)	5,300 (94.7%)

※ 총 사업비중 골프장 조성비(477억원)는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부담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위생·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보건의료시설(변경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다. 복지시설(변경)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

○ 본 대상지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은 계획하지 않았으나, 신대배후단지내 계획된 문화 시설·공공청사용지에 아래와 같은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

○ 가능시설 : 아동복지·노인복지·노인여가모자복지·장애인복지·보육시설

※ 변경사유 : 신대배후단지 입주민 증가에 따른 영아(0~2세)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용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변경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75호

도로공사시행 변경 허가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허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861호선
공사의 종류	가속차로 확보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 간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80-12번지 ~ 오사리 산146-6번지		
공사시행장소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6번지 일원		
착수 예정일	2015년 4월	준공 예정일	당초 : 2016.12.31 변경 : 2017.06.30

○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교통소통 관련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가속차선 확보

※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자 : 광양시 향동자원(주)

대표이사 신 성 호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87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 일반 현황

업 종	업 등 록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 록 일	비 고
공공측량업	03-000916	주식회사 금양이엔씨건축사무소	김미영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1	2016.12.16.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89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12. 22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150824)	주식회사 디케이건설 (지윤서)	전남 목포시 하당로 241번길 12 201(상동, 성광오피스텔)	2016. 12. 19.

목포시 고시 제2016-21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3-44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죽교동 536-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3-444호선)사업 【사업명 : 죽교동 통나무가든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분할 측량결과 편입토지 지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2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536-16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3-444호선)사업 ○ 사 업 명 : 죽교동 통나무가든 옆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80m, B=6m, A=56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16. 12. 15.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 : 다음	편입 지번 변경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건설과 비치)	
8. 실시계획 공람공고 완료	○ 공람기간 : 2016. 11. 10. ~ 11. 24.(14일간) ○ 공람장소 : 목포시청 건설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3485(건설과 도로시설계)	

가. 토지 조서(변경)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1	죽교	536-16	536-134	대	1,226	62	62	목포시 상동 1123-6	이옥례			편입토지 지번변경
2	죽교	536-27	536-27	전	93	93	93	광주광역시 남구 효시랑길14,101동1401호 (봉선동,포스코더샵아파트)	권광모			
3	죽교	536-54	536-54	전	1,114	1,114	2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0길 3-10 (봉천동)	강숙자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14 (순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 및 지상권
4	죽교	536-126	536-126	도	45	45	45	목포시 상동 1123-6	이옥례	광주 동구 대인동7-12	주식회사 광주은행	근저당권
5	죽교	629-36	629-36	도	6,950	6,950	130		국 토 교통부			

나. 지장물 조서(변경)

연번	지장물소재지				건물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1	죽교	536-16	536-134	대	기타	담장	블록	8.00	이옥례	목포시 상동 1123-6	편입토지 지번변경
					기타	화단	흙	23.00			
					조경수	관상수	기타	3			

목포시 고시 제2016-21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66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광동3가 5-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및 편입 토지조서 등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2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광동3가 5-1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칭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38m, B=20m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1188-2) ○ 성 명 :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1. 3. 18. ○ 준공예정일 : 당초 2016. 12. 31. 변경 2018. 12. 31.(2년 연장)	변 경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변경)	변 경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8414 (도시계획과) ○ 문의 전화 : 061-270-3649 (도시재생과)	

가.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합 계				5,648.3	3,197.6						
1	광동3가	5-17	대	1.9	1.9	국(기획재정부)	국				
2	〃	5-20	대	64.7	64.7	공	목포시				
3	〃	5-21	대	5.8	5.8	공	목포시				
4	〃	5-16	대	51.8	51.8	공	목포시				
5	〃	5-19	대	41.7	41.7	공	목포시				
6	〃	5-18	대	72.2	72.2	공	목포시				
7	〃	4-14	대	163.5	163.5	공	목포시				
8	〃	4-13	대	19.3	19.3	국(기획재정부)	국				
9	〃	4-3	대	125.6	125.6	공	목포시				
10	〃	4-12	대	41.8	41.8	공	목포시				
11	〃	4-10	대	7.4	7.4	공	목포시				
12	〃	4-11	대	0.2	0.2	공	목포시				
13	호남동	11-6	도	192.0	103.7	국(국토해양부)	국				
14	동명동	10	도	1,347.2	949.4	국(국토해양부)	국				
15	광동3가	11	도	2328.4	363.8	국(국토해양부)	국				
16	동명동	53	대	7.2	7.2	당초	목포시 동명동 1-7번지	안광순			
						변경	공	목포시			
17	〃	54-1	대	6.9	6.9	당초	무안군 몽탄면 용외길 28	서춘자	광주 서구 쌍촌동 137-4 신천힐탑맨션 101동 2301호	조민철	근저당
						변경	공	목포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8	동명동	58-1	도	51.2	51.2	당초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381 2. 목포시 동명동 1-7번지 3. 목포시 동명동 1번지 4. 공	1.석옥림 2.안광순 3.김평권 4.목포시			
						변경 공	목포시			
19	〃	55-1	대	13.4	13.4	공	목포시			
20	〃	56-1	대	9.6	9.6	공	목포시			
21	〃	52	대	148.8	148.8	공	목포시			
22	〃	51	대	29.8	29.8	공	목포시			
23	〃	59-1	대	45.8	45.8	공	목포시			
24	〃	50	대	69.0	69.0	공	목포시			
25	〃	60-1	대	190.4	190.4	공	목포시			
26	〃	46-2	대	218.8	218.8	공	목포시			
27	〃	41-1	대	83.3	83.3	공	목포시			
28	호남동	11-14	대	20	20	공	목포시			
29	동명동	59	대	110.9	110.9	당초 목포시 산정동 1105-3	서안자			
						변경 공	목포시			
30	〃	57	대	43.1	43.1	당초 1. 목포시 동명동 1-7 2.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428 3.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37-14 4. 목포시 동명동 1-7 5.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주공아파트, 202-404 6. 목포시 동명동 1-7	1.서정순 2.오정숙 3.오선주 4.오기수 5.오량수 6.오정수			
						변경 공	목포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31	동명동	58	도	2.4	2.4	당초 1. 목포시 동명동 1-7 2.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381 3. 해남군 황상면 부곡리 330 4. 목포시 동명동 1-7 5. 목포시 축복동3가 1 6. 목포시 동명동 1 7. 목포시 동명동 1-7	1.서정순 2.석옥림 3.이경자 4.인광순 5.박근성 6.김평권 7.박연엽			
						변경 공	목포시			
32	〃	56	대	45.6	45.6	당초 목포시 동명동 1-7	박연엽			
						변경 공	목포시			
33	〃	55	대	33.7	33.7	당초 목포시 산정동 1726, 초원상아아파트 805호	전보영			
						변경 공	목포시			
34	〃	58-2	도	1.8	1.8	당초 1. 목포시 동명동 1-7 2.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381 3. 해남군 황상면 부곡리 330 4. 목포시 동명동 1-7 5. 목포시 축복동3가 1 6. 목포시 동명동 1 7. 목포시 동명동 1-7	1.서정순 2.석옥림 3.이경자 4.인광순 5.박근성 6.김평권 7.박연엽			
						변경 공	목포시			
35	〃	54	대	53.1	53.1	당초 무안군 몽탄면 용외길 28	서춘자	1. 광주시 서구 상무오월로51번길 2, 101동 2301호 2. 광주시 서구 상무오월로51번길 2, 101동 2301호	1조민철 2박선숙	
						변경 공	목포시			

나. 지장물 조서

연번	소 재 지		건물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지붕 형식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동명동	41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	28.5	목포시 삼일로 9번길 10-2	김태수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	46.72					

목포시 공고 제2016-124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66호/자유시장 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1. 목포시 산정동 1383-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66호)사업【사업명 : 목포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공사】공사가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2

목포시장

■ 공사완료 공고 내용

구분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산정동 1383-5번지 일원(자유시장 주차장)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66호)사업 ○ 사업명칭 : 목포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당 초 : 평면주차장 59면 ○ 변 경 : 건물주차장 76면(증 17면) - 부지면적 : 1,651.60㎡ - 건축면적 : 1,330.39㎡ - 연 면 적 : 1,330.39㎡ (주차장 1,252.31, 기타 78.08(관리실, 물탱크실, 계단실)) - 층 수 : 1층 2단 - 주차면수 : 76면(1층 34면, 지붕층 42면)	변 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명 :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6. 06. 30. ○ 사업준공일 : 201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목포시 산정동 1383-5, 1383-7번지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비치)	
8. 실시계획 공람공고 완료	○ 공람 기간 : 2016. 06. 09. ~ 2016. 06. 23.(14일간) ○ 공람 장소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683(목포시청 교통행정과)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합 계				1,651.6	1,651.6					
1	산정	1383-5	주차장	1,190.4	1,190.4		목포시			
2	산정	1383-7	주차장	461.2	461.2		목포시			

여수시 고시 제2016-33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2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 가. 성 명 : (당초) 한국남동발전(주) 허 업
(변경) 한국남동발전(주) 장재원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가. 사업의 목적
 -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여수화력 1호기를 폐지하고 아역청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순환유동층 석탄화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면적 : (당초) 63,498㎡, (변경) 75,325.3㎡
 - 시설용량(전력시설) 68.5만kW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1300번지 일원
 - 나. 면 적 : (당초) - 63,498㎡
(변경) - 75,325.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16. 12. 31.
6.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 : 다음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국·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변경)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이해관계인	비고
1	중흥동	산146-1	임	48,143	22,256.3	한국남동발전(주)		
2	중흥동	1300	대	83,687	27,810	한국남동발전(주)		
3	중흥동	1300-8	대	126	126	한국남동발전(주)		
4	중흥동	1300-9	대	5,028	5,028	한국남동발전(주)		
5	중흥동	1300-23	장	1,747	1,747	한국남동발전(주)		
6	중흥동	1300-26	대	49,334	18,358	한국남동발전(주)		
계				188,065	75,325.3			

여수시 공고 제2016-2208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시전동 92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여수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67,972.8㎡(1단계)
 - 나. 규 모 : 도로(17,097.3㎡), 조경시설(10,150㎡, 교양시설(41,158㎡), 편익시설(4,420㎡), 녹지(95,147.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 2009. 8. 5.(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공사완료일 : 2016. 11. 30.
 - 나. 준공검사일 : 2016. 12. 13.
6. 준공토지조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16-2227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개발사업「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2-5공구)」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6. 12. 22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 :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2-5공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공영개발과)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일원
 - 나. 면 적 : 2-5공구 211,527.8㎡
4. 준공인가연월일 : 2016. 12. 16.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2) 및 공영개발과(☎ 061-659-45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고시 제2016-167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8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2. 22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 청 내 용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전기공급설비		
명 칭	순천 외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사업목적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자금조달	자기자본 2,000백만원(10%), PF 18,000백만원(90%)	시 행 기 간	사업인가일 ~ 2018. 12. 31.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153,993㎡
(건축시설 : 93,410㎡, 공공시설 : 2,284㎡, 녹지시설 : 58,3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준에너지 대표 박원찬
 -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동, 운암산아이파크아파트)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 :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순천시 공고 제2016-1605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6. 12. 22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명 칭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규 모	주 소	성 명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순천외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건축시설	93,410㎡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77 104동 1202호	준에너지 대표 박원찬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공공시설	2,280㎡			
		녹지시설	58,303㎡			
		도 로	L=492m, B=4-5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순천 외서 반용	288	답	1,742	1,742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2	순천 외서 반용	288-1	전	10,612	10,612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마록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3	순천 외서 반용	288-2	전	10,017	10,017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4	순천 외서 반용	289	답	648	648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5	순천 외서 반용	290	답	1,275	1,275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북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6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91-1	답	2,379	2,379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북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7	순천 외서 반용	291-2	답	2,089	2,089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지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8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91-3	답	380	380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지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9	순천 외서 반용	산30	임	116,066	20,991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지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10	순천 외서 반용	산31-1	임	76,165	71,000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지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1	순천 외서 반용	산32	임	32,132	32,132	김종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3동 1304호				
						오명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우미린 아파트 202동 202호				
						이강승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현대아파트 305동 1004호				
						김경원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23, 102동 502호 (마록동, GS 상무자이)				
						김용귀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45, 101동 1104호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이애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대주아파트 201동 1705호				
						조 동	전남 무안군 삼향읍 광단길 28-13				
						안문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99, 104동 103호 (봉선동, 봉선1차 남양휴튼)				
						곽원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7, 104동1202호 (운암산아이파크)				
						정종갑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6동 1302호 (금호동, 중흥아파트)				
12	순천 외서 반용	872-18	구	3,571	728		국 (국토교통부)				

나주시 고시 제2016-1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2-92호로 기 고시되어 나주시 대기동, 용산동, 부덕동 일원에 추진 중인 『이창택지~국도23호선(용산동) 도시계획도로(대로 2류 1호선외 3개 호선) 개설공사』가 사업추진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 12. 22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전남 나주시 이창동, 대기동, 용산동, 부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이창택지~국도23호선(용산동) 도시계획도로(대로 2류 1호선 외 3개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면 적 : 81,503㎡

○ 규 모 : L=2.101km, B=8~30m

호 선	폭원 (m)	기 능	연장 (m)	금회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대로2류1호선	30	보조간선	4,328	941	4호광장	대로1-4호선	일반도로	건·고제337호 1986.8.4
중로2류18호선	15	보조간선	1,165	271	대로1-4호선 이창동33-9답	대로1-4호선 용산동154-22과	일반도로	전·고제177호 1988.11.19
중로2류20호선	15	보조간선	703	703	대로2-1호선 대기동556답	중로2-18호선 이창동34-14답	일반도로	건·고 제2003
소로2류187호선	8	국지도로	252	186	대로1-4호선 이창동186-9대	중로2-18호선 이창동34-14답	일반도로	전·고 제93-78호 1993.5.3.
계			6,448	2,10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나주시장(도시과)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변경)

○ 착수예정일 : 2012. 6.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 12. 31.

- 변경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변경없음)

일련 번호	동리	지 번 변경전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대기동	544-1	과	1524	995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2	대기동	543	과	271	138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3	대기동	541	과	1398	222	김선례	광주 남구 진월동 27 한신2차@ 202-161-1	
						박혜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1-1	
						유복례	전나 나주시 대기동 520	
계		3필지		3,193	1,355			

☐ 지장물(변경없음)

일련 번호	동리	지 번 변경전	지목	지장물 종류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대기동	544-1	과	유실수 (배나무, 감나무)	51	개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2	대기동	541 540-1	과	유실수 (감나무)	68	개	김선례	광주 남구 진월동 27 한신2차@ 202-161-1	
							박혜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1-1	
							유복례	전나 나주시 대기동 520	
계		2건			119	개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8. 인가조건 : 당초 인가조건 준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 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고 제2016-1341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5-2지 일원 “국립나주박물관 자재창고 신축 및 야외체험학습장 조성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 12. 22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국립나주박물관 자재창고 신축 및 야외체험학습장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역시문화시설용지	소 계	17,224	
	박물관	6,390	
	야외공연미당	2,747	
	잔디미당 야외전시장	8,013	
	체험시설	74	
공공시설용지	소 계	11,297	
	관리동	770	
	주차장	4,135	
	도로	1,198	
	산책로 및 순환도로	5,194	
녹지시설용지	소 계	45,751	
	습지생태원	330	
	녹지	9,377	
	조성녹지	36,044	
합 계		74,272	

○ 건축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본관동	지하2층	5,092.84	1동(일반)
	지하2층(중층)	113.97	
	지하1층	4,074.04	
	지상1층	1,725.00	
옥외화장실		72.85	2동(일반1, 가설1)
경비실		20.94	1동(일반)
자재창고		240.00	1동(일반)
아외체험장		60.72	5동(가설5)
합 계		11,400.3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나주박물관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5. 4. 29.

○ 준공일 : 2016. 12. 1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고 제2016-135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대기동, 용산동, 부덕동 일원 “이창택지~국도23호선(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및 누락 지장물 편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이창동, 대기동, 용산동, 부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2류1호선 외 3개 노선)사업

○ 명 칭 :

- 당 초 : 이창택지~국도23호선(용산동) 도시계획도로(대로 2류 1호선 외 3개호선)개설공사
- 변 경 : 이창택지~국도23호선(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79,965.7㎡

○ 규 모 : L=2.101km, B=8~30m

노선명	폭원 (m)	기 능	연장 (m)	금회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대로2류1호선	30	보조간선	4,328	941	4호광장	대로1-4호선	일반도로	건·고제337호 1986.8.4
중로2류18호선	15	보조간선	1,165	271	대로1-4호선 이창동33-9답	대로1-4호선 용산동154-22과	일반도로	전·고제177호 1988.11.19
중로2류20호선	15	보조간선	703	703	대로2-1호선 대기동556답	중로2-18호선 이창동34-14답	일반도로	건·고 제2003
소로2류187호선	8	국지도로	252	186	대로1-4호선 이창동186-9대	중로2-18호선 이창동34-14답	일반도로	전·고제93-78호 1993.5.3.
계			6,448	2,10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도시과)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2. 6. 20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6. 12. 31.

- 변 경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국·공유지 제외)

일련 번호	동리	지 번 변경전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대기동	544-1	과	1524	995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2	대기동	543	과	271	138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3	대기동	541	과	1398	222	김선례	광주 남구 진월동 27 한신2차@ 202-161-1	
						박혜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1-1	
						유복례	전남 나주시 대기동 520	

○ 지장물

일련 번호	동리	지 번 변경전	지목	지장물 종류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대기동	544-1	과	유실수 (배나무, 감나무)	51	개	김태환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79-1, 207호	
2	대기동	541 540-1	과	유실수 (감나무)	68	개	김선례	광주 남구 진월동 27 한신2차@ 202-161-1	
							박혜란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1-1	
							유복례	전남 나주시 대기동 520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변경사유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준공예정일 변경 및 누락 지장물 편입

10.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 나주시 도시과 : ☎ 061-339-8982, 8975, Fax 061-339-2826

나주시 공고 제2016-136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방수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15-1번지 일원 “수청재해위험지구내 유수지 및 방수설비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방수설비)사업의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과 누락 지장물 및 잔여지 편입,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1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방수설비)사업

○ 명 칭 : 수청재해위험지구내 유수지 및 방수설비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당초		변경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유수지	유수시설	7,356	42.2	7,356	42.0
	펌프장	2,609	15.0	2,609	14.9
	유입수로	4,030	23.1	4,111	23.5
	녹 지	2,430	14.0	2,430	13.9
	도 로	968	5.7	968	5.7
	합계	17,413	94.3.0	17,474	100.0
방수설비	배수시설	10,314	100.0	10,314	100.0
총 합계		27,727		27,914	

○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건축물명	배수펌프동
건 축 면 적	553.40㎡
연 면 적	923.34㎡
층 수	지상 2층, 지하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배수펌프동 1개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4. 7. 10.

○ 준공예정일 :

- 당 초 : 2016. 12. 31.

- 변 경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변경내용 : 편입토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누락 지장물 및 잔여지 편입, 사업기간 연장

10.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 나주시 도시과 : ☎ 061-339-8975, Fax 061-339-2826

○ 나주시 안전총괄과 : ☎ 061-339-7282, Fax 061-339-2829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m)	성명	주소		
토지	남평읍 수원리	205-5	대	17	1	205-5	17	무길림태랑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51		
토지	남평읍 수원리	209-8	대	11	11	209-8	11*(1/3)	장판수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27		
							11*(1/3)	천전청웅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59		
							11*(1/3)	김자판암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09-3		
토지	남평읍 수원리	209-9	대	36	1	209-9	36*(1/3)	장판수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27		
							36*(1/3)	천전청웅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59		
							36*(1/3)	김자판암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09-3		
토지	남평읍 수원리	210-7	답	35	11	210-14	12	장판수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27		
토지	남평읍 수원리	210-8	답	23	14	210-15	12				
토지	남평읍 수원리	210-9	답	238	79	210-16	85	김운식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213-4		
						210-17	14				
지장물	남평읍 수원리	706-18				관정	1	이상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53, 102-402(유성그린파크)		
		673-20				집수정	3				
지장물	남평읍 수원리	673-20				집수정	1	이이환	나주시 남평읍 금당길 20		
지장물	남평읍 수원리	705-1				비닐하우스	56	이부운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62		
						비닐하우스	50				
						배수관	1				
						바닥	21				
						자재이전비	1				
지장물	남평읍 수원리	210-9				비닐하우스	124	김운식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85		
						비닐하우스	124				
						대추나무	10				
						작약	2				
						포도나무	1				
						오가피	10				
						석류나무	2				
						느릅	1				
지장물	남평읍 수원리	646-2				대추나무	2	박혜영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도시개발@ 607-1016호		
						담장	6				

※ 변경되는 부분만 게재, 전체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열람장소 비치

담양군 고시 제2016-117호

담양 군관리계획(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담양 군관리계획(광주호저수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12. 22

담양군수

1. 담양 군관리계획(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 다음
2. 관계 도면 : 실음 생략
3. 관계도서는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061-380-309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담양 군관리계획(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관리계획(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군계획시설(광주호 저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주호	저수지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항리	1,491,290	감)951	1,490,339	담양군 고시2013-65호 2013. 9. 5	전체 2,186,435㎡ 복구 696,096㎡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주호	▶ 면적 - 기정 : 1,491,290㎡ - 변경 : 1,490,339㎡ 감) 951㎡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요건(중앙도시계획위원회 4회 심의 의견 중 상류부의 하천준설 및 수월교 재설치 공사 금지) 및 감사원 감사(불필요한 토지 매입 지적 → 일부토지 환매 결정) 와 문화재청 협의 결과(당초계획보다 낮은 높이의 홍수위로 현 상 변경 허가) 반영에 따른 저수지 일부 제척

보성군 공고 제2016-1249호

동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동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2

보성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동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나. 위 치 :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9-2 일원
- 다. 사 업 량 : 사면정리 L=126M, A=3,310㎡, 가옥철거 7동
- 라. 사업시행자 : 보성군수(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마.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11월

2. 보상계획 열람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12. 22. ~ 2017. 1. 6.까지(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 061-850-5552
- 다. 열람내용

- 동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권리 포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상세내역은 보성군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함

-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3.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개별 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여 개별 협의 후 보성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

※ 사·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사·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 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보상금 산정→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라.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5. 기타사항

-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성군청 안전건설과로 연락바랍니다.
-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 드립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061-850-5552, FAX 061-850-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예정)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11,772	4,193						
1	보성	보성	보성	산55-11	도	3,431	280	국 (건설부)					
2	보성	보성	보성	산55-12	임	691	560	김광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363삼호 아파트4-1402				
3	보성	보성	보성	산55-13	도	28	28	국 (건설부)					
4	보성	보성	보성	83-6	대	99	99	보성군					
5	보성	보성	보성	83-8	대	13	13	보성군					
6	보성	보성	보성	83-7	대	90	90	보성군					
7	보성	보성	보성	83-3	대	85	85	보성군					
8	보성	보성	보성	83-9	대	76	76	보성군					
9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임	5,087	2,270	박성주	광주시 북구 중흥동 276-31				1/2
								박용주	광주시 북구 중흥동 276-31				1/2
10	보성	보성	보성	79-3	대	156	156	박정태	보성군 보성읍 동운길 4-51	김진애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48-14,102동902호	근저당권 설정	
11	보성	보성	보성	79-2	대	321	321	장태순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64-6	동방유량 주식회사 선수현 임상숙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7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12	보성	보성	보성	79-1	대	354	100	이애숙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7				
13	보성	보성	보성	71	전	922	110	강장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2				
14	보성	보성	보성	72-1	대	419	5	박해완	보성군 화천면 군농리 643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720.20						
1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주택	목조및 블럭스레트	65.2	김형욱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55-6				
					가추	블럭스레트	20.6						
					가추	철파이프	12						
					차양	철재	26.6						
					대문	블록	1						
					담장		32.82						
					화단		1						
					앵두		1식						
					감나무		2주						
2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주택	블럭강판	68.66	손주호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55-6				
					창고	블럭스레트	11.6						
					창고	블럭스레트	5.22						
					창고	블럭스레트	5.8						
					차양	철파이프강 판	24.29						
					화덕	블록	1식						
					장독대	콘크리트	1식						
					복숭아		1주						
					감나무		1주						
					목련		1주						
3	보성	보성	보성	71	주택	블럭강판	40	서순봉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1				
					장독대	콘크리트	1식						
					세면장	콘크리트	1식						
4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주택	블럭스레트	21.06	안동근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55-6				
					화장실	조립식판넬	6.16						
					창고	블럭스레트	10.64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4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8.1	안동근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55-6				
					장독대	콘크리트	1식						
					플르트		1주						
					제리		1주						
					지두		1주						
					감나무		1주						
					매실		1주						
					보리수		1주						
					대추		1주						
					산초		1주						
					넝쿨장미		1주						
					느릅나무		1주						
					염나무		1주						
					모과		1주						
					청목		1주						
					철쭉		1주						
					참빛살		1주						
5	보성	보성	보성	79-2	주택	목조및 블럭스레트	80.4	선동식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2-2	장태순 동방유량 주식회사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164-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72	가압류 근저 당권	
					가추 (방)	블럭스레트	17.36						
					창고	벽돌슬래브	19.38						
					화장실	블럭스레트	6.6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28.8						
					계단	콘크리트	1						
					대문	철재	1						
					담장	블록	18						
					담장	블록	17.5						
					화단	자연석	2식						
										선수현 임상숙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1	저당권 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5	보성	보성	보성	79-2	남천		1주	선동식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2-2	장태순 동방유량 주식회사 선수현 임상숙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164-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01	가압류 근저 당권 저당권 저당권	
					단풍		1주						
					철쭉		7주						
					성죽		2주						
					무화과		1주						
					산초		1주						
					가시 오가피		4주						
6	보성	보성	보성	79-3	주택	블럭판넬	71.08	박정태	보성군 보성읍 동운길4-51	김진애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48-14,102동902호	근저 당권	
					가추	블럭판넬	16.11						
					창고	조립식판넬	19.25						
					견사및 창고	블록및목조 판넬 및 스레트	13.50						
					차양	철파이프 아크릴	15.87						
					장독대	콘크리트	1식						
					담장	블록	18						
					대문	철재	1식						
					화단		1식						
					철쭉		12주						
					서향		4주						
					석류		1주						
					장미		1주						
					넝쿨장미		1주						
7	보성	보성	보성	산55-6	주택	블럭스레트	35.36	김오식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산55-6				
					차양	철파이프 스레트	12.24						
					가추	블록 및 철파이프 스레트	8						
					대문	함석	1식						
					우물	자동모터	1식						

화순군 고시 제2016-123호

화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6. 12. 22

화순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사업
 - 명 칭 :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사업(만연산 도시산림공원)
3. 면적 및 규모 : 철쭉원 쉼터 등 공원조성 A=25,67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 순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산림소득과(☎061-379-3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65-10	임	1,662	1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5 햇빛마을 2113-703	최성균
2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65-12	임	383	49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102-2304	김화영
3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65-14	임	552	20	광주 서구 월산동 963-3	정상도
4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65-16	임	377	54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102-2304	김화영
5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0-3	임	6,862	1,464		화순군
6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1	임	17,730	2,341		국(산림청)
7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2	임	20,727	5,338		화순군
8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3	임	17,455	770		화순군
9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2-1	임	23,702	94	광주시 동구 산수동 531-27	이병섭
10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3	임	5,752	891		화순군
1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6	임	21,228	526		화순군
12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4	임	9,421	637		화순군
13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5-2	임	4,924	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64 가경 이편한세상 502-1002	강지영
14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0	답	1,005	203		화순군
15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5	답	2,777	2,245		화순군
16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6	답	1,851	12		화순군
17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8	답	2,420	1,287		화순군
18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9	답	2,245	68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수길 36-2	김용일
19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4-3	전	17,276	1,152		화순군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0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4-4	전	40,265	5,689		화순군
2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65-9	도	2,121	40		화순군
22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0-2	도	1,544	333		화순군
23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71-1	도	1,758	226		화순군
24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7	도	214	212		화순군
25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9	도	1,007	633		화순군
26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10	도	5,311	445		화순군
27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3-12	도	71	21		화순군
28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 185-1	도	1,864	88		화순군
29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714-7	도	524	4		화순군
합계	총 29필지			213,028	25,679		

화순군 고시 제2016-124호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67호로 고시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 12. 22

화순군수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화순군청 문화관광과(☎061-379-317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①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262	-	18,262	100.0	
	계획관리지역	-	증)18,262	18,262	100.0	
	보전관리지역	556	감) 556	-	-	
	농림지역	17,706	감)17,70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169-2일원	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18,262	100%이하	문화재청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존 정비계획(변경). 2013”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주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㉔	고인돌 공원	문화 공원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169-2일원	64,150	증)18,242	82,392	전남고시 2006-74호 (2006.5.2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고인돌공원	- 공원 면적 18,242㎡ 증가 - 당초 64,150㎡→ 변경 82,392㎡(증 18,242㎡) - 녹지, 하천, 주차장, 체험장 시설 면적 증가	주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64,150	증)18,242	82,392	100.0	5,908.18	증)520	6,428.18	8,122.18	증)520	8,642.18	38동
조경 시설	소계		2,346	증)650	2,996	3.6	-	-	-	-	-	-	
	1-1	하천	1,710	증)579	2,289	2.8	-	-	-	-	-	-	
	1-2	연못	604	-	604	0.7	-	-	-	-	-	-	
	1-3	목교	32	증)71	103	0.1	-	-	-	-	-	-	
휴양 시설	소계		8,893	-	8,893	10.8	-	-	-	-	-	-	
	2-1	전망대 및 숲	5,359	-	5,359	6.5	-	-	-	-	-	-	
	2-2	피크닉장	3,534	-	3,534	4.3	-	-	-	-	-	-	
교양 시설	소계		23,153	증)3,739	26,892	32.6	5,699.18	증)386	6,085.18	7,913.18	증)386	8,299.18	34동
	3-1	연구소 및 전시관	2,012	-	2,012	2.4	1,760	-	1,760	3,974	-	3,974	지하2층, 지상1층 (1동)
	3-2	아외공연장	2,332	-	2,332	2.8	-	-	-	-	-	-	
	3-3	식물원	2,514	-	2,514	3.1	3,100	-	3,100	3,100	-	3,100	1동
	3-4	장묘문화원	1,021	-	1,021	1.2	-	-	-	-	-	-	파고라 1개소
	3-5	거석문화원	4,655	-	4,655	5.6	-	-	-	-	-	-	아시아 등 5대륙 파고라 2개소
	3-6	어로체험장	1,693	-	1,693	2.1	-	-	-	-	-	-	
	3-7	선사생활체험장	4,920	증)3,739	8,659	10.5	609.23	증)386	995.23	609.23	증)386	995.23	25동
	3-8	농경생활체험장	2,472	-	2,472	3.0	-	-	-	-	-	-	
	3-9	고인돌 및 주거발굴체험장	1,135	-	1,135	1.4	229.95	-	229.95	229.95	-	229.95	7동
3-10	원시사냥 체험장	399	-	399	0.5	-	-	-	-	-	-		
편의 시설	소계		2,926	증)5,646	8,572	10.4	209	-	209	209	-	209	3동
	4-1	주차장	2,419	증)5,646	8,065	9.8	-	-	-	-	-	-	205면 (장애인7면, 대형10면)
	4-2	화장실	223	-	223	0.3	177	-	177	177	-	177	2동
	4-3	샤워실/화장실	284	-	284	0.3	32.0	-	32.0	32.0	-	32.0	1동
도로 및 광장	소계		9,496	증)2,808	12,304	14.9	-	증)134	134	-	증)134	134	
	-	산책로 및 유적탐방로	7,035	증)2,083	9,118	11.1	-	증)134	134	-	증)134	134	1동
	5-1	돌멘광장	1,497	-	1,497	1.8	-	-	-	-	-	-	파고라 5개소
	5-2	다목적광장	964	-	964	1.2	-	-	-	-	-	-	
	-	도로	-	증)725	725	0.8	-	-	-	-	-	-	마을 진출입 도로
녹지 시설	소계		17,336	증)5,399	22,735	27.6	-	-	-	-	-	-	
	-	조경녹지	17,336	증)5,399	22,735	27.6	-	-	-	-	-	-	파고라 7개소

화순군 공고 제2016-1049호

화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사전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 공고합니다.

2016. 12. 22

화순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사업
 - 명 칭 : 고인돌유적지 시설지구(선사체험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18,24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 순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7. 열람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문화관광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문화관광과(☎061-379-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계			43필지		38,358.7	18,242			
1	화순	도곡	효산	57-2	전	206.0	203.0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88	양동석	
2	화순	도곡	효산	57-3	도	239.0	5.0		화순군	
3	화순	도곡	효산	139-3	전	33.0	33.0		화순군	
4	화순	도곡	효산	139-4	전	318.0	318.0		화순군	
5	화순	도곡	효산	139-6	도	184.0	43.0		화순군	
6	화순	도곡	효산	139-7	전	67.0	67.0		화순군	
7	화순	도곡	효산	139-8	전	19.0	19.0		화순군	
8	화순	도곡	효산	139-11	도	56.0	11.0		화순군	
9	화순	도곡	효산	139-13	도	604.0	121.0		화순군	
10	화순	도곡	효산	146-2	도	635.0	100.0		화순군	
11	화순	도곡	효산	147	전	298.0	298.0		화순군	
12	화순	도곡	효산	147-1	도	92.0	41.0		화순군	
13	화순	도곡	효산	148	전	789.0	789.0		화순군	
14	화순	도곡	효산	148-1	도	478.0	66.0		화순군	
15	화순	도곡	효산	150-1	전	1,118.0	1,105.0		화순군	
16	화순	도곡	효산	150-2	전	527.0	527.0		화순군	
17	화순	도곡	효산	150-3	도	63.0	18.0		화순군	
18	화순	도곡	효산	150-4	전	98.0	98.0		화순군	
19	화순	도곡	효산	150-5	도	16.0	16.0		화순군	
20	화순	도곡	효산	150-6	도	545.0	65.0		화순군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21	화순	도곡	효산	151	전	1,107.0	1,107.0		화순군	
22	화순	도곡	효산	151-1	전	30.0	30.0		화순군	
23	화순	도곡	효산	152	전	917.0	917.0		화순군	
24	화순	도곡	효산	152-1	전	486.0	486.0		화순군	
25	화순	도곡	효산	152-2	도	71.0	47.0		화순군	
26	화순	도곡	효산	153	전	4,089.0	4,089		화순군	
27	화순	도곡	효산	153-1	전	36.0	34.0		화순군	
28	화순	도곡	효산	153-2	전	447.0	447.0		화순군	
29	화순	도곡	효산	154-1	전	618.0	618.0		화순군	
30	화순	도곡	효산	154-2	전	453.0	453.0		화순군	
31	화순	도곡	효산	154-3	전	298.0	233.0		화순군	
32	화순	도곡	효산	155-1	전	1,274.0	1,274.0		화순군	
33	화순	도곡	효산	155-2	전	454.0	240.0		화순군	
34	화순	도곡	효산	155-3	전	501.0	501.0		화순군	
35	화순	도곡	효산	155-4	전	374.0	200.0		화순군	
36	화순	도곡	효산	156	답	2,880.0	2,394.0		화순군	
37	화순	도곡	효산	156-2	답	740.0	55.0		화순군	
38	화순	도곡	효산	178-36	도	55.0	2.0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233	양성식	
39	화순	도곡	효산	178-37	도	114.0	16.0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233	양성식	
40	화순	도곡	효산	178-42	도	345.0	62.0		화순군	
41	화순	도곡	효산	1216	구	8,456.0	8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화순	도곡	효산	1217	도	404.0	150.0		국(국토교통부)	
43	화순	도곡	효산	1346	도	7,824.7	5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강진군 공고 제2016-564호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도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및 풍동리 일원에 시행하는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강진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도로사업
- 나. 위 치 :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일원
- 다.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라.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 마. 사업의 주요내용 : 0.79Km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1)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 2) 열람(공고)기간 : 2016. 12. 22. ~ 2017. 1. 11.(공고일로부터 20일간)
- 3) 열람장소 : 강진군청 안전건설과(도로관리팀)
- 4) 이의신청 : 토지,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이내에 강진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1)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 개별통지
- 2) 보상가산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여 개별 협의 후 강진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
 -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 3)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천
 - 추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16.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보상 절차 및 방법 : 강진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후 계좌입금

3.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안전건설과(☎061-430-34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 제 목		강진 전통된장 활성화 지원도로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강 진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동	용소	961-17	답	1481.2	3.4	최대섭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960			
2	군동	용소	549-3	답	735	13	최병준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87			
3	군동	용소	549-2	답	495	19	최병준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87			
4	군동	용소	549-1	답	1596	222	최재곤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90			
5	군동	용소	628-2	대	499	2	윤영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2			
6	군동	용소	628-1	대	889	18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1			
7	군동	용소	628-1	대	889	4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1			
8	군동	용소	548-1	답	906	362	윤영남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2			
9	군동	용소	547-2	답	2813	32	최재열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700			
10	군동	용소	547-1	답	3126	939	최재열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700			
11	군동	용소	309-1	답	804	88	오병택	강진군 군동면 신기길 23			
12	군동	용소	953-13	답	2658.4	745.9	김쌍옥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983			
13	군동	풍동	1120-12	답	2828.3	217.9	최남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13			
14	군동	풍동	1121-1	답	891.1	457.4	김창식	전남 여수시 문덕동 464 문덕주공아파트 14-101			
15	군동	풍동	1059	답	119	36	최남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13			
16	군동	풍동	1122-4	답	1829.4	432.3	김진옥 외3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11			
17	군동	풍동	1024	대	440	20	최영식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77-4			
18	군동	풍동	1042	대	446	27	김희점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88, 116동 401호(동춘동, 삼환아파트)			
19	군동	풍동	1122-2	답	3168.9	93.9	윤영태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961			
20	군동	풍동	1053	전	970	29	마안엽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649			
21	군동	풍동	1122-1	답	3421.4	90.8	김규석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설리 192-23	강진농업 협동조합	강진읍 남성리 19-1	
22	군동	풍동	1043	답	569	82	김평식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27			
23	군동	풍동	996-2	전	560	18	김쌍식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649			
24	군동	풍동	1054	임	4594	474	최미경 외3인	광주 북구 군왕로 46, 1002호(두암동, 기산로얄아파트)			
25	군동	풍동	996-1	전	922	183	김동섭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10-1			

편입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동	용소	548-1	답	906	362	도라지	-	20	㎡	운영남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628-2			
2	군동	용소	547-1	답	3126	939	관정	소형	1	식	최진호	강진군 군동면 신가2길 27			
3	군동	풍동	1054	임	4594	474	웃나무	-	4	주	최미경 외3인	광주시 북구 군왕로 46, 1002호 (두암동, 기산로알아파트)			
							벗나무	-	2	주					
							대추나무	-	1	주					
							헛개나무 외1	-	13	주					
							보리수나무	-	3	주					
							매실나무	-	4	주					
							황금촉백	-	4	주					
							철쭉	-	40	주					
							감나무	-	4	주					
							석류나무	-	5	주					
							돼지감자	-	50	㎡					
4	군동	풍동	996-2	전	560	18	소나무	-	12	주	김쌍식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649			

해남군 고시 제2016-199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50, 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구교리 320-1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50, 15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20-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도서관~해남중학교앞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 2-50, 151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년 12월 30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 (소로 2-50, 151호선)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시행	소로	2	50 151	8~10m 미만	국지도로	399	구교리 320-1	남외리 901-1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총계	66필지												
1	해남	구교	348-2	348-41	대	546	67		군유지	해남군			
2	해남	구교	348-9	348-42	전	450	180		군유지	해남군			
3	해남	구교	348-11	348-43	대	670	104		군유지	해남군			
4	해남	구교	348-16	348-44	대	264	67		군유지	해남군			
5	해남	구교	348-30	348-45	대	200	2		군유지	해남군			
6	해남	구교	351-3	351-11	대	215	31		군유지	해남군			
7	해남	구교	351-3	351-15	대	184	29		해남읍 군청길 2-1, 2층	김미*			
8	해남	구교	351-5	351-12	대	398	30		군유지	해남군			
9	해남	구교	351-8	351-13	대	219	142		군유지	해남군			
10	해남	구교	351-9	351-14	전	244	4		군유지	해남군			
11	해남	구교	352-3	352-13	대	390	49		군유지	해남군			
12	해남	구교	352-3	352-14	대	341	41		군유지	해남군			
13	해남	구교	353-2	353-10	대	343	107		군유지	해남군			
14	해남	구교	353-3	353-11	대	440	19		군유지	해남군			
15	해남	구교	353-3	353-12	대	440	10		군유지	해남군			
16	해남	구교	353-3	353-15	대	411	23		군유지	해남군			
17	해남	구교	353-4	353-13	대	202	77		군유지	해남군			
18	해남	구교	353-6	353-14	대	211	1		군유지	해남군			
19	해남	구교	354	354-6	증	4672	76		광주시 북구 임동 5-32	재단법인 광주구천			
20	해남	구교	366-1	366-24	대	379	4		군유지	해남군			
21	해남	구교	366-1	366-25	대	379	37		군유지	해남군			
22	해남	구교	366-7	366-26	대	87	3		군유지	해남군			
23	해남	구교	366-9	366-27	대	115	3		군유지	해남군			
24	해남	구교	366-9	366-28	대	115	4		군유지	해남군			
25	해남	구교	367-5	367-12	대	549	136		군유지	해남군			
26	해남	구교	353-1	353-1	전	43	43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70	배일*			
27	해남	구교	357-3	357-3	도	43	43		광주시 소태동 722	히롤드 헨리			
28	해남	구교	366-3	366-3	도	78	78		군유지	해남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29	해남	구교	366-4	366-4	대	91	91		군유지	해남군			
30	해남	구교	366-23	366-23	대	19	19		군유지	해남군			
31	해남	구교	901-12	901-12	도	28	28		국유지	건설 교통부			
32	해남	구교	901-22	901-22	도	1	1		해남읍 성내리 240-2	박병*			
33	해남	구교	323-5	323-5	도	85	85	지분3/15	해남읍 구교리 323-1	정안*	해남읍 읍내리 6-4	해남읍 교회 신용협동 조합	가입류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96, A-204	임혜*			
								지분2/15	해남읍 성내리 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수성리 161-2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태*			
34	해남	수성	277-6	277-23	대	426	8		군유지	해남군			
35	해남	수성	277-6	227-24	대	426	3		군유지	해남군			
36	해남	수성	227-17	227-25	대	174	5		군유지	해남군			
37	해남	수성	231-20	231-22	전	248	2		군유지	해남군			
38	해남	수성	231-21	231-23	전	274	91		군유지	해남군			
39	해남	구교	322-8	322-11	도	81	12			해남군			
40	해남	구교	345-3	345-8	대	231	25		군유지	해남군			
41	해남	구교	347	347-3	전	1911	23		군유지	해남군			
42	해남	구교	347-2	347-4	전	219	32		군유지	해남군			
43	해남	구교	348-1	348-34	대	544	4		군유지	해남군			
44	해남	구교	348-3	348-35	대	350	51		군유지	해남군			
45	해남	구교	348-6	348-36	대	456	205		군유지	해남군			
46	해남	구교	348-12	348-37	대	259	26		군유지	해남군			
47	해남	구교	348-26	348-38	대	186	37		군유지	해남군			
48	해남	구교	351-5	351-10	대	472	74		군유지	해남군			
49	해남	구교	323-8	323-8	도	41	41		군유지	해남군			
50	해남	구교	348-31	348-31	전	148	148		군유지	해남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51	해남	수성	227-22	227-22	도	9	9		군유지	해남군			
52	해남	구교	351-8	351-8	대	145	145		군유지	해남군			
53	해남	수성	231-14	231-14	대	202	202		군유지	해남군			
54	해남	수성	231-11	231-11	대	63	63		군유지	해남군			
55	해남	구교	323-7	323-20	대	331	20		해남읍 수성6길 16	정관*			
56	해남	구교	323-1	323-18	대	210	25	지분3/15	해남읍 구교리 323-1	정안*	해남읍 읍내리 6-4	해남읍 교회 신용협동 조합	가압류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96, A-204	임혜*			
								지분2/15	해남읍 성내리 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수성리 161-2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혜*			
								지분2/15	해남읍 구교리 323-1	임태*			
57	해남	구교	324-9	324-9	도	3	3			해남군			
58	해남	구교	324-2	324-11	대	281	4			해남군			
59	해남	구교	322-5	322-12	도	77	1		해남읍 성내리 350-8	조병*			
60	해남	구교	321-4	321-5	답	671	16		해남읍 구교리 152-1	임장*			
61	해남	구교	900-5	900-5	잡	90	90		국유지	기획 재정부			
62	해남	구교	248	248	도	145	145		국유지	기획 재정부			
63	해남	구교	357-4	357-4	대	245	132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80	재단법인 광주구천			
64	해남	구교	357-4	357-6	대	245	80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80	재단법인 광주구천			
65	해남	구교	323-2	323-19	대	219	14		해남읍 성내리 323-2	강연*			
66	해남	수성	227-17	227-31	대	169	9		해남읍 성내리 227-17	임철*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227-17	유치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지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총계	4건												
1	해남	구교	323-7	점포	철골조	46	m ²			정관*			
2	해남	구교	321-4	울타리	철파이프 철망조	1	식			임장*			
				항나무		1	주						
				팽나무		2	주						
3	해남	구교	323-1 323-5	주택1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93.4	m ²		해남읍 구교리 323-1	정안순			
				계단	콘크리트	1	식						
				테라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9.7	m ²						
				보일러실	목조 썬라이트	2.9	m ²						
				가추	목조 썬라이트	14.3	m ²						
				주택2	조적조 슬래브	29.2	m ²						
				담장	조적조	81	m ²						
				대문	철재 슬래브	1	식						
				세면대	콘크리트	1	식						
				바닥포장1	보도블럭	10	m ²						
				바닥포장2	콘크리트	34.8	m ²						
				화단		2	식						
				유자		3	주						
				무화과		1	주						
				팽나무		1	주						
				매화나무		1	주						
				감나무		2	주						
				철쭉		1	주						
				피라칸사스		1	주						
				황칠나무		1	주						
				팔손이		3	주						
				동백나무		2	주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지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3	해남	구교	323-1 323-5	식나무		1	주		해남읍 구교리 323-1	정안순			
				후박나무		2	주						
				삼백초		14	m ²						
4	해남	구교	354-6	대문	철재 슬래브	1	식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80	재단법인 광주구천			
				조명등및 전기시설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28m ²	식						
				울타리		56m ²	일괄						
				생울타리		46m ²	일괄						
				잔디		70m ²	식						
				창고		48m ²	일괄						
				동산이전비		1	식						

해남군 고시 제2016-200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해리 409-6번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6-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KT~은혜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7년 2월 10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소로 3-8호선)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시행	소로	3	8	8~10m 미만	국지도로	170	해리 409-6	해리 364-8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총계	19필지												
1	해남	해리	355-4	355-11	대	356	100		군유지	해남군			
2	해남	해리	355-5	355-12	대	184	51		군유지	해남군			
3	해남	해리	355-8	355-13	전	279	92		군유지	해남군			
4	해남	해리	355-9	355-14	전	311	12		군유지	해남군			
5	해남	해리	360-5	360-10	대	111	5		군유지	해남군			
6	해남	해리	360-6	360-11	전	208	23			KT			
7	해남	해리	361-5	361-30	대	1031	40		군유지	해남군			
8	해남	해리	364-3	364-7	대	304	38		해남읍 남부순환로 16	박점*	해남읍 성내리 25-1	해남농협	근저당권
9	해남	해리	364-6	364-8	대	120	74		군유지	해남군			
10	해남	해리	408-6	408-14	대	402	24			KT			
11	해남	해리	409-2	409-7	대	2690	17			KT			
12	해남	해리	352-5	352-5	도	3	3		군유지	해남군			
13	해남	해리	408-13	408-13	도	10	10			KT			
14	해남	해리	409-6	409-6	도	168	168			KT			
15	해남	해리	355-7	355-7	전	13	13		해남읍 해리 355-5	배남*	해남읍 중앙1로 181	해남농협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농협 중앙회	가압류
16	해남	해리	358-5	358-5	전	79	79		군유지	해남군			
17	해남	해리	361-29	361-29	대	37	37		군유지	해남군			
18	해남	해리	356-1	356-2	전	1013	2		군유지	해남군			
19	해남	해리	357	357-1	전	198	83		군유지	해남군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지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총계	3건												
1	해남	해리	364-7	화단		2	식		해남읍 해리 355-5	배남*	해남읍 중앙1로 181	해남농협	가압류
				남천나무		1	주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농협중앙회	가압류
				구기자		1	주						
				오기피		1	주						
				수국		1	주						
				청죽		1	주						
				대추나무		1	주						
				감나무		2	주						
				관상수		1	주						
				대문	철재	1	식						
				계단	콘크리트	1	식						
				간판		1	식						
				담장	블록	13.7m	식						
				관정		1	식						
				포장	콘크리트	10	m ²						
2	해남	해리	360-11	담장	화강석	13m	식			KT			
				배롱나무		2	주						
				단풍나무		2	주						
				동백나무		1	주						
				향나무		1	주						
				철재기둥	cctv, 스피커 등	1	식						
3	해남	해리	409-6	눈향나무		3	군			KT			
				관상수		1	주						
				콘크리트 구조물		168m ²	식						
				울타리	철재기둥및 쇠사슬	1	식						

해남군 고시 제2016-201호

해남군 군계획시설(도로 : 소2-2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남동리 126번지 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2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1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외회관~LG전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년 12월 31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소로 2 - 29호선)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29	8~10m 미만	국지도로	220	남동리 37-3	남동리 2-3	일반 도로	
시행	소로	2	29	8~10m 미만	국지도로	220	남동리 37-3	남동리 2-3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총계	44필지												
1	해남	남동	2-2	2-5	대	203	4			해남군			
2	해남	남동	2-4	2-6	대	324	2			해남군			
3	해남	남동	3	3-1	대	367	28			해남군			
4	해남	남동	5-1	5-5	대	681	9			해남군			
5	해남	남동	6-1	6-4	대	152	16			해남군			
6	해남	남동	6-1	6-1	대	152	136			해남군			
7	해남	남동	6-2	6-5	대	79	16			해남군			
8	해남	남동	8	8-10	대	155	5	1/2		해남군			
								3/14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광주시 동구 소태동443 2차진아하이빌 201동606호	김애*	가압류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216	윤진*	근저당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기*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고*			
9	해남	남동	8-2	8-11	대	119	4	1/2		해남군			
								3/14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216	윤진*	근저당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기*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고*			
10	해남	남동	8-4	8-12	대	116	6			해남군			
11	해남	남동	18	18-1	대	69	27			해남군			
12	해남	남동	19	19-2	대	99	24			해남군			
13	해남	남동	19-1	19-3	대	66	13			해남군			
14	해남	남동	20	20-3	대	310	5			해남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5	해남	남동	22-1	22-5	대	82	16			해남군			
16	해남	남동	22-2	22-6	대	20	8			해남군			
17	해남	남동	23	23-1	대	166	34			해남군			
18	해남	남동	25	25-2	대	96	18			해남군			
19	해남	남동	25-1	25-3	대	60	11			해남군			
20	해남	남동	26	26-1	대	264	6			해남군			
21	해남	남동	27-1	27-4	대	66	15			해남군			
22	해남	남동	27-2	27-5	대	63	6			해남군			
23	해남	남동	35-2	35-9	대	345	2			해남군			
24	해남	남동	37	37-4	대	48	1			해남군			
25	해남	남동	37-2	37-2	대	77	56			해남군			
26	해남	남동	37-2	37-5	대	77	21			해남군			
27	해남	남동	38-	38-4	대	241	8			해남군			
28	해남	남동	39-1	39-7	대	228	14		광주시 북구 운암동 396-36	이영*	해남읍 남동리 39-1	지성빌 라	대지권
29	해남	남동	53	53-2	대	131	6			해남군			
30	해남	남동	53-1	53-3	대	90	5			해남군			
31	해남	남동	54	54-1	대	208	17			해남군			
32	해남	남동	55-1	55-6	대	238	25			해남군			
33	해남	남동	55-2	55-7	대	142	3			해남군			
34	해남	남동	55-4	55-8	대	255	27			해남군			
35	해남	남동	55-5	55-9	대	232	28			해남군			
36	해남	남동	58	58-6	대	344	32			해남군			
37	해남	남동	58-1	58-7	대	135	23			해남군			
38	해남	남동	61	61-1	대	681	68			해남군			
39	해남	남동	62	62-2	대	545	31			해남군			
40	해남	남동	63	63-1	대	284	106			해남군			
41	해남	남동	8-8	8-8	대	11	1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8	정자*			
42	해남	남동	22-4	22-4	대	7	7			해남군			
43	해남	남동	58-5	58-5	대	13	13			해남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44	해남	남동	64-1	64-23	대	37	12	3/7	해남읍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216	윤진*	근저당
								2/7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촌파인힐101-401)	김기*			
								2/7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촌파인힐101-401)	김고*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지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총계	3건												
1	해남	남동	8 외	주택 및 창고	블록조 함석지붕	58.8	㎡	1/2		해남군			
				대문	철재	1	식	3/14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기*			
								2/14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고*			
2	해남	남동	64-1	점포(1층)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38.3	㎡	3/7	해남읍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주택(2층)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38.3	㎡	2/7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기*			
								2/7	광주시 남구 독립로80번길10-1 (송춘파인할101-401)	김고*			
3	해남	남동	53	간판	열여섯빛깔의 아이들	2	식		해남읍 해남읍 남동리 64-1	윤성*			

해남군 고시 제2016-202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해남군 고도리 147-4번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2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47-4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흙친갈비~한국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6년 12월 31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중로 2-4호선)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4	15-20m 미만	국지도로	440	고도리 163-2	고도리 397-6	일반 도로	
시행	중로	2	4	15-20m 미만	국지도로	440	고도리 163-2	고도리 397-6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총계	37필지												
1	해남	고도	160-1	160-7	전	350	148		군유지	해남군			
2	해남	고도	160	160-5	전	1153	568		군유지	해남군			
3	해남	고도	156	156-1	답	3537	565		군유지	해남군			
4	해남	고도	152	152-1	답	3501	321		군유지	해남군			
5	해남	고도	150-1	150-8	답	1071	659		군유지	해남군			
6	해남	고도	134-9	134-23	대	221	114		군유지	해남군			
7	해남	고도	134	134-21	답	304	236		군유지	해남군			
8	해남	고도	134-5	134-22	대	258	98		군유지	해남군			
9	해남	고도	132-7	132-7	도	83	83		화산면 해창리 21	장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메리츠 종합 금융 증권(주)	가압류
											서울시 중랑구 사기정로367 (면목동)	한국양계 축산협동 조합	근저당
10	해남	고도	130-14	130-32	대	241	25		군유지	해남군			
11	해남	고도	130-15	130-33	대	162	132		군유지	해남군			
12	해남	고도	130-8	130-28	대	169	139	216/252	군유지	해남군			
								36/2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42 (정자동)	천영*			
13	해남	고도	130-16	130-34	대	162	7		군유지	해남군			
14	해남	고도	130-7	130-27	대	139	108		군유지	해남군			
15	해남	고도	130-6	130-26	대	155	12		군유지	해남군			
16	해남	고도	130-9	130-29	대	238	7		군유지	해남군			
17	해남	고도	130-10	130-30	대	182	145		군유지	해남군			
18	해남	고도	130-11	130-31	대	251	118		군유지	해남군			
19	해남	고도	131-3	131-10	대	331	193		군유지	해남군			
20	해남	고도	131	131-9	대	473	251		군유지	해남군			
21	해남	고도	399-11	399-27	대	198	4		군유지	해남군			
22	해남	고도	399-10	399-26	대	314	211		군유지	해남군			
23	해남	고도	399-7	399-25	대	200	26		군유지	해남군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 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당초	변경									
24	해남	고도	397-3	397-7	답	203	1		군유지	해남군			
25	해남	고도	163-2	163-7	대	638	304		군유지	해남군			
26	해남	고도	163-3	163-9	대	274	169		군유지	해남군			
27	해남	고도	161-3	161-3	전	172	172		군유지	해남군			
28	해남	고도	131-4	131-11	대	331	12		군유지	해남군			
29	해남	고도	160	160-8	전	201	46		군유지	해남군			
30	해남	고도	160-6	160-9	전	384	145		군유지	해남군			
32	해남	고도	161-4	161-13	대	245	98		군유지	해남군			
33	해남	고도	161	161-11	대	252	128		군유지	해남군			
34	해남	고도	161-1	161-12	대	309	87		군유지	해남군			
	해남	고도	161-8	161-8	전	16	16		문내면 선두리 371-38	이명*			
35	해남	고도	161-7	161-14	전	92	47		군유지	해남군			
36	해남	고도	163-4	163-10	대	133	82		군유지	해남군			
37	해남	고도	163-11	163-11	대	11	11		군유지	해남군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의외의권리		
	읍면	리	지번 (당초지번)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총계	1건												
1	해남	고도	132-7	담장 등	벽돌조 등	1	식		화산면 해창리 21	장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메리츠종합 금융증권(주)	가압류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367 (면목동)	한국양계 축산 협동조합	근저당

함평군 고시 제2016-105호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9호(2016. 5. 27)로 결정고시된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2

함평군수

1.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조서 : “다음”
2.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함평군 민원봉사(061-320-34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859	-	9,859	100.0	
주거 지역	소 계	3,987	증) 5,872	9,85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87	감) 3,98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859	9,859	100.0	
관리 지역	소 계	5,872	감) 5,872	-	-	
	계획관리지역	5,872	감) 5,872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9,829	증) 30	9,85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80호 ('15.12.03)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426,075,447		426,075,447	100.0	
도 시 지 역	합 계		27,315,689		27,321,561	6.4
	주거 지역	소 계	3,392,613	증) 5,872	3,398,485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2,199,782	감) 3,987	2,195,795	0.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8,226	증) 9,859	1,038,085	0.2
		준주거지역	164,605		164,605	0.1
	상업 지역	소 계	385,040		385,040	0.1
		일반상업지역	385,040		385,040	0.1
	공업 지역	소 계	2,471,232		2,471,232	0.6
		준공업지역	625,918		625,918	0.2
		일반공업지역	1,845,314		1,845,314	0.4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 시 지 역	녹지 지역	소 계	21,066,804		21,066,804	4.9	
		생산녹지지역	5,857,774		5,857,774	1.4	
		자연녹지지역	15,209,030		15,209,030	3.5	
비 도 시 지 역	합 계		398,759,758		398,753,886	93.6	
	관리 지역	소 계	141,758,491	감) 5,872	141,752,619	33.3	
		보전관리지역	60,260,201		60,260,201	14.2	
		생산관리지역	28,473,899		28,473,899	6.7	
		계획관리지역	53,024,391	감) 5,872	53,018,519	12.4	
	농 립 지 역		207,942,617		207,942,617	48.8	
	자연환경 보전지역	육 지 부	15,740,198		15,740,198	3.7	
		해 면 부	33,318,452		33,318,452	7.8	

※ 기정 :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함평 군 고시 제2012-80호(' 12.12.20))

나.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859	-	9,859	100.0	
주거 지역	소 계	3,987	증) 5,872	9,85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87	감) 3,98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859	9,859	100.0	
관리 지역	소 계	5,872	감) 5,872	-	-	
	계획관리지역	5,872	감) 5,872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87	250	-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계획 관리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872	25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9,859	-	-	9,859	
①	1BL	9,859	①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9,859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 리시설은 예외)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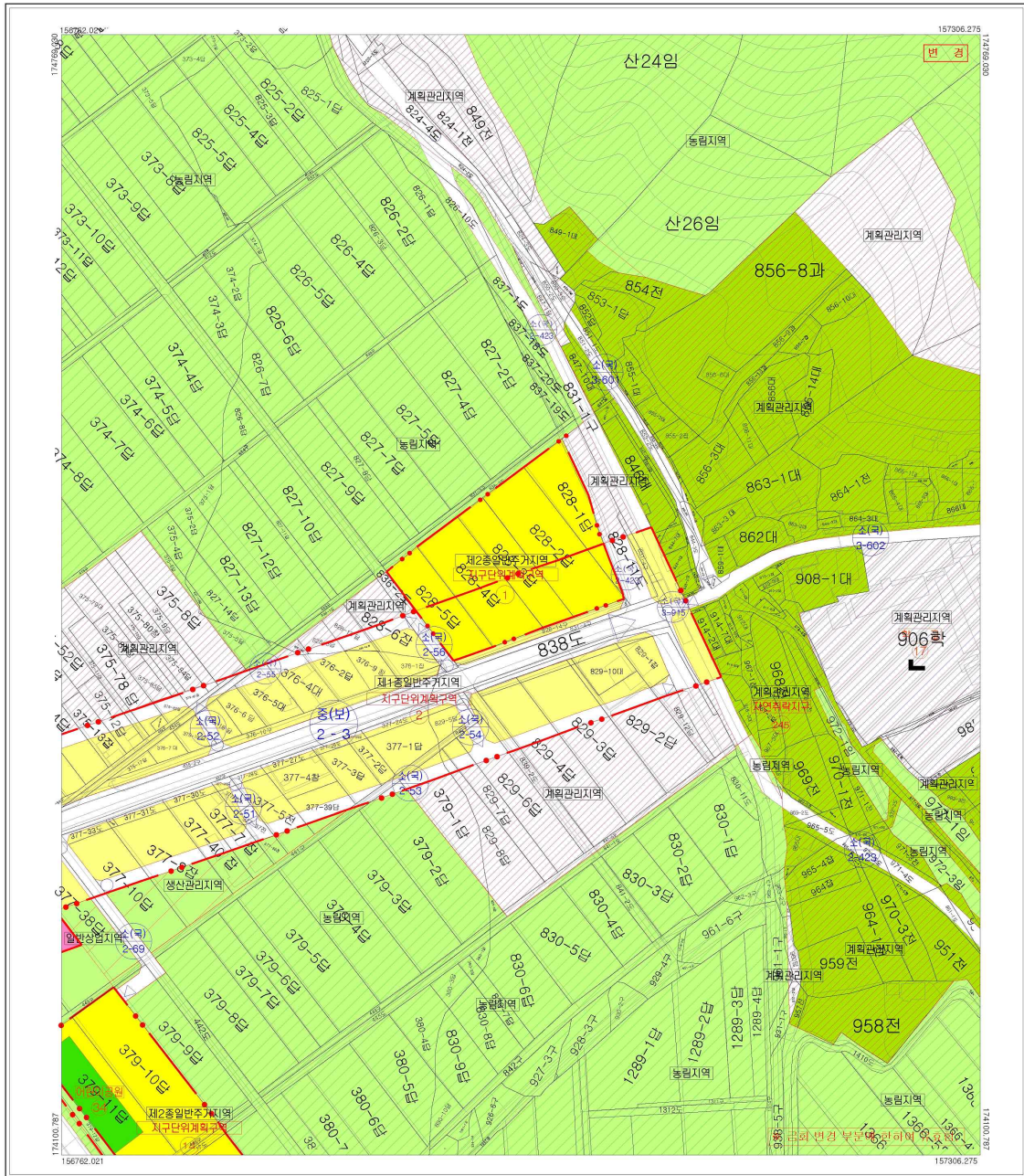
도면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용도 A	허용	☐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 「주택법」 제2조 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공동 주택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배치		• 문화재현상변경 2구역내 건축물 미배치 및 광장 등 설치 권장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이하로 적용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경관 계획	공동 주택 용지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 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환경색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교통 처리 계획	차량 진출입 계획	• 간선도로인 영수로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주차장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로 활성화 도모

합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도업번호 : 나주07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축척 = 1:1,200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공용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보전관리지역	어린이공원
	농림지역	학교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
	일반상업지역	소로

승인권자	합평군수
승인일자	2016년 7월 일
고시년도	2016년 7월 일
고시번호	합평군고시 제 2016- 호
작성자	(주)경동엔지니어링
작성일자	2016년 7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합평군수

구분	입안권자		승인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경동엔지니어링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합평군
직위	부사장	과장	부장	
직명	특금기술자	4급	2급	
성명	정재호	김영민	노영규	
확인인				

진도군 고시 제2016-51호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진도교육지원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진도군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진도교육지원청) 조성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 면적정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진도교육지원청)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22

진도군수

1.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1-1번지 일원
2.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청사이설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종 류 : 진도군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청사)사업
 - 명 칭 :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4.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구분	당초	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8,158㎡	감11㎡	8,147㎡	면적확정측량결과 정정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전라남도 교육감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6.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변경없음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8. 실시계획 관계 도서 :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군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40-3882), 전라남도 교육청 (061-260-0114)
9. 열람사항 :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 및 관계도서
 - ※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 전라남도 교육청(061-260-0114)으로 문의 바랍니다.